



발 간 사

송 주 연 (이천가정·성상담소 소장)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폭력사건이 감소하기는커녕 언론보도를 통하여 크든 작든 더 많은 성폭력 관련 사건들을 접하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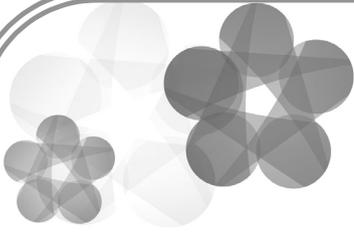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사건은 2010년도 20,375건에서 2014년도에 29,517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약자에 대한 성폭력은 우려할 만큼 늘고 있음도 우리 모두의 불안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묻혀 버릴만한 사건들이 피해자의 의식변화로 말미암아 법적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건 후 대처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의식의 변화 정도는 21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음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확산코자 상담과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경기도민 성인식·성폭력 예방 실태조사’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토대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성폭력상담소 15곳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남부 21개시군에서 총5,261명의 경기도민이 참여하여 작성한 실태조사는 성인식·성폭력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별로 참여인원과 내용에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성인식·성폭력 예방 실태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결과를 상담과 교육 등 성폭력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킬런지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의미있는 작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번 작업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바라는 바, 개개인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추방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 성폭력 제로 사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쉽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작업을 위하여 애 써주신 경기 남부권역 15개 성폭력상담소 소장님들과 씨을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류복연소장님,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정은자소장님,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은미소장님,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영애소장님 그리고 가천대학교 서현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초청 말씀

(사)씨울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지역 15개 성폭력상담소와 공동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경기남부 성폭력상담소들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확산코자 상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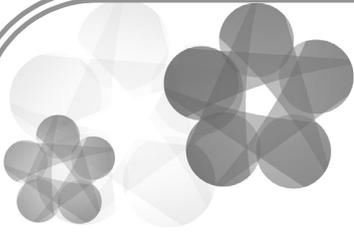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약 5,000여명의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인식,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행복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관련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경기도민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안전한 경기도민·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지역 대표
(사)씨울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 장 류복연
경기남부 15개성폭력상담소 소장단 일동
드림



순서

사회 : 한영애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14:00 - 14:20 개회

내빈소개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 류복연(씨올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장)

축사 : 박광철(경기도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4:20 - 14:25 경과 보고

정은자(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14:25 - 14:45 주제 발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 정책방안 모색」

송주연(이천가정성상담소장)

14:45 - 15:35 정책방안 모색 토론

좌장 : 류복연(씨올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소장)

패널 : 박옥분 (경기도 도의원)

안효미 (경기도청 보육청소년과 전 과장)

구순란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 장학사)

김종국 (경기지방경찰청 경감)

장수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송주연 (이천가정성상담소 소장)

15:35 - 15:5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 - 16:00 폐회

☉☉ 목 차 ☉☉

| | |
|-----------------------------------------------------|----|
| I. 조사 연구의 개관 | 9 |
|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 2. 조사 설계 | 9 |
| 3. 조사 도구 | 10 |
| II. 조사 결과 | 11 |
| 1. 조사 응답자의 인적 사항 | 11 |
| (1) 성별 분포 | 11 |
| (2) 연령 분포 | 11 |
| (3) 지역 분포 | 12 |
| 2. 경기도민의 성인식, 성폭력예방 | 13 |
| 3. 경기도민의 성인식, 성폭력예방에 대한 소견 | 46 |
| III. 경기도민 성인식, 성폭력예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제언 | 48 |
| IV. 각 분야 토론자료 | |
| 1.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정책 및 교육 필요 / 박옥분 경기도의원 | 52 |
| 2. ‘성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연대 / 구순란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 관장학사 | 56 |
| 3. 성폭력예방교육의 발전 방향 / 장수진 변호사 | 61 |
| V. 설문지 문항에 대한 해석 | 63 |
| 1. 설문지 문항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 | 63 |
| 2. 설문지 문항에 대한 해석 | 66 |
| VI. 참고문헌 | 80 |
| VII. 부 록 | 81 |
| 1. 경기도민 성인식, 성폭력예방 실태조사 설문지 | 81 |
| 2. 경기도 성폭력상담소 주소록 | 84 |
|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5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정책 과제

송 주 연 (이천가정성상담소 소장)

I. 조사 연구의 개관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가 성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흘렀다. 이제는 성폭력 근절이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대두될 만큼 성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3년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의무화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의 2014년 7월 개정에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통합실시 규정이 마련되었고, 교육에 대한 점검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성폭력교육과 관련한 현장의 상황도 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의 콘텐츠 생산과 강사 양성의 문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의 문제,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의 확대가 절실할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 올바른 성의식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시기적절한 성폭력예방교육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조사 설계

| | |
|-------|------------------------------------------|
| 대 상 | ▶ 경기도민 |
| 유효 표본 | ▶ 경기도 남부 21개 시·군 지역 20대 이상의 도민들(총5,261부) |
| 표본 추출 | ▶ 지역별·성별·연령별 표집 |
| 조사 방법 | ▶ 자기 응답식 설문 조사 |
| 조사 기간 | ▶ 2015년 5월~7월 |

3. 조사 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경기남부권 15개 상담소에서 논의를 거쳐 자체 제작한 “경기도민 성인식·성폭력예방 실태조사”로 성별, 연령, 응답자 지역,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의식, 성교육 유무와 성폭력 대처 여부 등 총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별, 연령, 응답자 지역을 제외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의식, 성교육 유무와 성폭력 대처 여부 등 경기도민의 성인식·성폭력예방 실태과 관련된 문항은 총 22문항이다.

수집된 자료 총5,261부의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경기도민 성인식·성폭력예방 실태조사 문항 구성〉

| 설문 영역 | 설문 내용 | 문항수 |
|------------|--------------------|-----|
|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응답자 거주지 | 3 |
|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인식 | 5 |
| 성의식 | 성의식 | 10 |
| 성폭력예방교육 여부 | 성폭력예방교육 여부 | 2 |
| 지역 안정성 여부 | 지역 안정성 여부 | 2 |
| 성폭력예방의 대안 | 성폭력예방의 대안 | 1 |
| 성폭력 대처 여부 | 성폭력 대처 여부, 도움 받을 곳 | 2 |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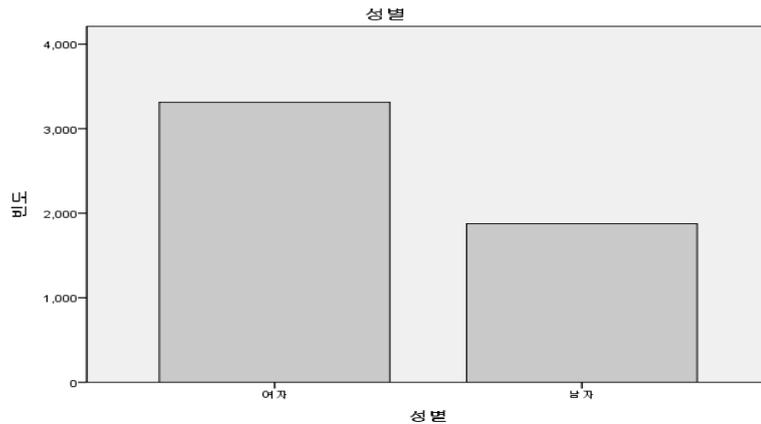
1. 조사 응답자의 인적 사항

(1) 성별 분포

〈표 2. 성별 분포〉

| 구 분 | | 사 례 수 | 비 율 |
|-----|----|-------|------|
| 성 별 | 여성 | 3,312 | 63.0 |
| | 남성 | 1,876 | 35.7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여성 응답자가 3,312명으로 과반수인 63%, 남성 응답자는 1,876명으로 35.7%를 차지하였다. 무응답은 1.3%로 나타났다. 아래의 막대그림표를 보면 여성 응답자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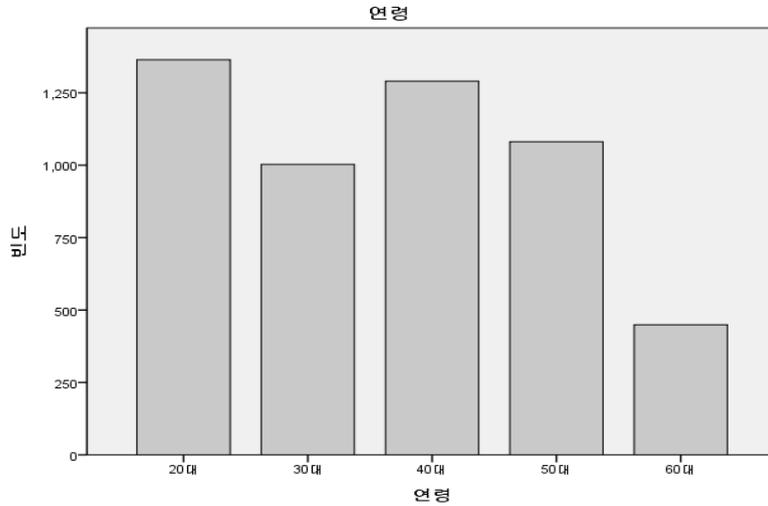


(2) 연령 분포

〈표 3. 연령 분포〉

| 구 분 | | 사 례 수 | 비 율 |
|-----|--------|-------|------|
| 연 령 | 20대 | 1,364 | 25.9 |
| | 30대 | 1,003 | 19.1 |
| | 40대 | 1,290 | 24.5 |
| | 50대 | 1,081 | 20.5 |
| | 60대 이상 | 449 | 8.5 |

〈표 3〉에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응답자가 1,364명으로 25.9%, 30대 응답자가 1,003명으로 19.1%, 40대 응답자가 1,290명 24.5%, 50대 응답자가 1,081명 20.5%, 60대 이상응답자가 449명으로 8.5%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성인대상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래의 막대그림표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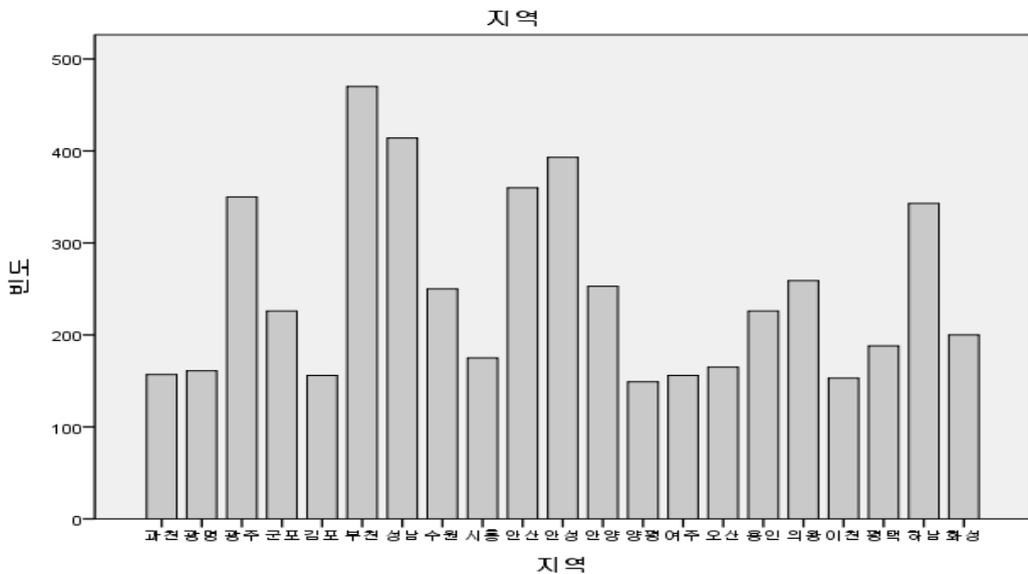
(3) 지역 분포

〈표 4. 지역별 분포〉

| 구분 | 사 례 수 | 비 율 | |
|----|-------|-----|-----|
| 지역 | 과천 | 157 | 3.0 |
| | 광명 | 161 | 3.1 |
| | 광주 | 350 | 6.7 |
| | 군포 | 226 | 4.3 |
| | 김포 | 156 | 3.0 |
| | 부천 | 470 | 8.9 |
| | 성남 | 414 | 7.9 |
| | 수원 | 250 | 4.8 |
| | 시흥 | 175 | 3.3 |
| | 안산 | 360 | 6.8 |
| | 안성 | 393 | 7.5 |
| | 안양 | 253 | 4.8 |
| | 양평 | 149 | 2.8 |
| | 여주 | 156 | 3.0 |
| | 오산 | 165 | 3.1 |

| 구분 | 사 례 수 | 비 율 |
|----|-------|-----|
| 용인 | 226 | 4.3 |
| 의왕 | 259 | 4.9 |
| 이천 | 153 | 2.9 |
| 평택 | 188 | 3.6 |
| 하남 | 343 | 6.5 |
| 화성 | 200 | 3.8 |

〈표 4〉에서 지역을 살펴보자면, 지역별 빈도가 높은 그룹으로는 부천 지역의 응답자가 470명으로 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성남 지역 응답자가 414명으로 7.9%, 안성 지역 응답자가 393명 7.5%이었으며, 빈도가 낮은 그룹으로는 양평 지역 응답자가 149명으로 2.8%, 이천 지역 응답자 153명 2.9%, 양평 지역 응답자는 149명 2.8%를 차지했다. 아래의 막대그림표를 보면 시각적으로 지역별 응답자 빈도를 알 수 있다.



2. 경기도민의 성에 대한 인식

경기도민에 대한 성폭력·성의식 조사는 15개의 기본 문항에 6개의 심층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경기도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 실태 설문지 중 문항 1~문항 15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문항 1~문항 15에서 성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p < 0.05$)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성의식 차이는 최소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있으므로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분석할 수 없어 지역의 경우 대략적인 빈도수를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참고로 응답 5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빈도수가 1위인 응답 결과는 진한 색으로 표시하고 2위 응답은 연한 색으로 표시, 표를 읽을 때 보기가 쉽도록 하였다.

먼저, <표 5>는 문항 1번 ‘가벼운 스कि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라는 질문에 성별·연령·지역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5.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33(1.0) | 154(4.7) | 345(10.5) | 1,791(54.4) | 970(29.5) | 189,839 (4) *** |
| | 남성 | 59(3.2) | 201(10.8) | 336(18.0) | 868(46.6) | 400(21.5) | |
| | 전체 | 92(1.8) | 355(6.9) | 681(13.2) | 2,659(51.6) | 1,370(26.6) | |
| 연 령 | 20대 | 15(1.1) | 58(4.3) | 190(13.9) | 688(49.0) | 432(31.7) | 297,808 (16) *** |
| | 30대 | 11(1.1) | 52(5.2) | 129(12.9) | 522(52.3) | 285(28.5) | |
| | 40대 | 13(1.0) | 75(5.9) | 140(10.9) | 675(52.7) | 377(29.5) | |
| | 50대 | 18(1.7) | 94(8.8) | 157(14.6) | 596(55.6) | 207(19.3) | |
| | 60대 이상 | 34(7.7) | 81(18.4) | 68(15.5) | 202(45.9) | 55(12.5) | |
| | 전체 | 91(1.8) | 360(7.0) | 684(13.3) | 2,663(51.7) | 1,356(26.3) | |
| 지 역 | 과천 | 3(1.9) | 25(15.9) | 34(21.7) | 91(58.0) | 4(2.5) | |
| | 광명 | 5(3.1) | 19(11.9) | 34(21.3) | 75(46.9) | 27(16.9) | |
| | 광주 | 6(1.7) | 28(8.2) | 43(12.5) | 154(44.9) | 112(32.7) | |
| | 군포 | 1(0.4) | 5(2.2) | 19(8.4) | 111(49.3) | 89(39.6) | |
| | 김포 | 6(3.8) | 12(7.7) | 11(7.1) | 110(70.5) | 17(10.9) | |
| | 부천 | 3(0.6) | 29(6.2) | 53(11.3) | 249(53.2) | 134(28.6) | |
| | 성남 | 0(0.0) | 20(4.8) | 29(7.0) | 210(50.8) | 154(37.3) | |
| | 수원 | 4(1.6) | 15(6.0) | 35(14.0) | 117(46.8) | 79(31.6) | |
| | 시흥 | 6(3.4) | 20(11.5) | 37(21.3) | 97(55.7) | 14(8.0) | |
| | 안산 | 3(0.9) | 21(6.0) | 39(11.1) | 203(57.8) | 85(24.2) | |
| | 안성 | 9(2.3) | 41(10.5) | 75(19.1) | 193(49.2) | 74(18.9) | |
| | 안양 | 6(2.4) | 14(5.6) | 26(10.3) | 119(47.2) | 87(34.5) | |
| | 양평 | 4(2.7) | 6(4.1) | 13(8.8) | 91(61.5) | 34(23.0) | |
| | 여주 | 5(3.2) | 14(9.0) | 42(26.9) | 73(46.8) | 22(14.1) | |
| | 오산 | 9(5.5) | 16(9.8) | 35(21.3) | 74(45.1) | 30(18.3) | |
| | 용인 | 4(1.8) | 5(2.2) | 23(10.2) | 95(42.0) | 99(43.8) | |
| | 의왕 | 2(0.8) | 15(5.8) | 36(13.9) | 135(52.1) | 71(27.4) | |
| | 이천 | 5(3.3) | 17(11.2) | 19(12.5) | 71(46.7) | 40(26.3) | |
| | 평택 | 0(0.0) | 5(2.7) | 15(8.2) | 95(51.6) | 69(37.5) | |
| | 하남 | 5(1.5) | 22(6.5) | 39(11.4) | 176(51.6) | 99(29.0) | |
| 화성 | 6(3.0) | 11(5.6) | 29(14.6) | 123(62.1) | 29(14.6) | | |
| 전체 | 92(1.8) | 360(7.0) | 686(13.3) | 2,662(51.5) | 1,369(26.5) | | |

*p<.05 **p<.01 ***p<.001

〈표 5〉에서 1번 문항인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여성이 ‘매우 그렇다’ 29.5%, ‘그렇다’ 54.4%로 두가지 응답율을 합하면 83.9%에 이른다. 여성들의 응답이 매우 치우쳐 있어 남녀 모두 이 문항에 동의하지만 여성이 더 강력하게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성폭력이라고 여성들은 생각하며 가벼운 스킨십조차도 성폭력으로 인지, 이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18.0%, ‘그렇다’ 46.6%, ‘매우 그렇다’ 21.5%로 세 가지 응답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 평소에도 남성들은 ‘가벼운 스킨십’정도로 치부하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성폭력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스킨십을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3.2%, ‘그렇지 않다’ 10.8%로, ‘보통이다’ 18.0%를 포함하여 32%가 가벼운 스킨십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며, 이는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남성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이 폭넓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7.7%, ‘그렇지 않다’ 18.4%로 다른 연령들과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에 답한 비율은 비슷했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12.5%, 20대 응답자들은 31.7%로 약 19.2%정도 연령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문항 1번의 답변에서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생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60대 이상이 성폭력예방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집단임을 고려할 때 60대에 대한 교육을 다른 연령층보다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을 살펴보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14개 지역은 답변 비율이 높는데 두번째 응답 비율이 높은 ‘보통이다’에 과천, 광명, 시흥, 안성, 여주, 오산, 화성 7개 지역은 인식 전환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이 더 많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표 6.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2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29(0.9) | 87(2.6) | 234(7.1) | 1,777(54.0) | 1,164(35.4) | 235.651 (4) *** |
| | 남성 | 53(2.8) | 155(8.3) | 288(15.4) | 894(47.9) | 478(25.6) | |
| | 전체 | 82(1.6) | 242(4.7) | 522(10.1) | 2,671(51.8) | 1,642(31.8) | |
| 연 령 | 20대 | 11(0.8) | 33(2.4) | 144(10.6) | 661(48.5) | 515(37.8) | 359.299 (16) *** |
| | 30대 | 9(0.9) | 38(3.8) | 98(9.8) | 523(52.4) | 330(33.1) | |
| | 40대 | 10(0.8) | 51(4.0) | 99(7.7) | 655(51.1) | 466(36.4) |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50대 | 13(1.2) | 63(5.9) | 132(12.3) | 613(57.3) | 249(23.3) | |
| | 60대 이상 | 38(8.6) | 61(13.8) | 50(11.3) | 226(51.0) | 68(15.3) | |
| | 전체 | 81(1.6) | 246(4.8) | 523(10.1) | 2,678(51.9) | 1,628(31.6) | |
| 지역 | 과천 | 4(2.5) | 32(20.4) | 27(17.2) | 87(55.4) | 7(4.5) | |
| | 광명 | 6(3.8) | 17(10.6) | 37(23.1) | 71(44.4) | 29(18.1) | |
| | 광주 | 3(0.9) | 16(4.7) | 21(6.1) | 175(51.0) | 128(37.3) | |
| | 군포 | 1(0.4) | 2(0.9) | 8(3.6) | 115(51.1) | 99(44.0) | |
| | 김포 | 7(4.5) | 18(11.5) | 13(8.3) | 90(57.7) | 28(17.9) | |
| | 부천 | 4(0.9) | 6(1.3) | 45(9.6) | 256(54.5) | 159(33.8) | |
| | 성남 | 0(0.0) | 8(1.9) | 22(5.3) | 191(46.2) | 192(46.5) | |
| | 수원 | 3(1.2) | 3(1.2) | 23(9.2) | 133(53.2) | 88(35.2) | |
| | 시흥 | 7(4.0) | 21(12.1) | 32(18.4) | 99(56.9) | 15(8.6) | |
| | 안산 | 2(0.6) | 8(2.3) | 20(5.6) | 213(60.2) | 111(31.4) | |
| | 안성 | 9(2.3) | 31(7.9) | 72(18.4) | 198(50.5) | 82(20.9) | |
| | 안양 | 4(1.6) | 4(1.6) | 20(7.9) | 111(44.0) | 113(44.8) | |
| | 양평 | 3(2.0) | 3(2.0) | 9(6.0) | 87(58.4) | 47(31.5) | |
| | 여주 | 5(3.2) | 15(9.6) | 34(21.8) | 80(51.3) | 22(14.1) | |
| | 오산 | 7(4.3) | 19(11.7) | 33(20.2) | 74(45.4) | 30(18.4) | |
| | 용인 | 2(0.9) | 2(0.9) | 14(6.3) | 98(43.8) | 108(48.2) | |
| | 의왕 | 1(0.4) | 4(1.5) | 23(8.9) | 136(52.5) | 95(36.7) | |
| | 이천 | 2(1.3) | 13(8.6) | 11(7.3) | 83(55.0) | 42(27.8) | |
| | 평택 | 1(0.5) | 0(0.0) | 10(5.4) | 91(48.9) | 84(45.2) | |
| | 하남 | 2(0.6) | 9(2.6) | 23(6.7) | 180(52.8) | 127(37.2) | |
| 화성 | 7(3.5) | 13(6.5) | 28(14.1) | 115(57.8) | 36(18.1) | | |
| 전체 | 80(1.5) | 244(4.7) | 525(10.1) | 2,683(51.9) | 1,642(31.7) | | |

*p<.05 **p<.01 ***p<.001

〈표 6〉에서 2번 문항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여성이 ‘매우 그렇다’ 35.4%, ‘그렇다’ 54.0%로 응답이 매우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문항 1.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처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물론이고 가벼운 화제 전환용을 핑계로 음담패설을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문화에 대하여 여성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15.4%, ‘그렇다’ 47.9%, ‘매우 그렇다’ 25.6%로 세가지 응답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천 지역은 ‘그렇지 않다’에 20.4%, ‘보통이다’에 17.2%, ‘전혀 그렇지 않다’에 2.5%로 총40.1%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다’에 동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세가지 응답 비율이 높은 오산(36.2%), 여주(34.6%), 시흥(34.5%), 광명(28.5%)

지역과 함께 성폭력예방교육이 절실하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8.6%, ‘그렇지 않다’ 13.8%로 다른 연령들과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에 답한 비율은 비슷했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15.3%, 20대 응답자들은 37.8%로 약 22.5%정도 차이를 보였다. 20대가 60대 이상 응답자들 보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성폭력예방교육의 기회가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7.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3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10(0.3) | 39(1.2) | 119(3.6) | 1,363(41.4) | 1,762(53.5) | 187.348 (4) *** |
| | 남성 | 13(0.7) | 75(4.0) | 194(10.4) | 844(45.1) | 744(39.8) | |
| | 전체 | 23(0.4) | 114(2.2) | 313(6.1) | 2,207(42.7) | 2,506(48.5) | |
| 연 령 | 20대 | 6(0.4) | 9(0.7) | 79(5.8) | 546(40.0) | 724(53.1) | 193.465 (16) *** |
| | 30대 | 1(0.1) | 24(2.4) | 53(5.3) | 422(42.3) | 497(49.8) | |
| | 40대 | 3(0.2) | 17(1.3) | 63(4.9) | 522(40.7) | 676(52.8) | |
| | 50대 | 4(0.4) | 27(2.5) | 75(7.0) | 516(48.0) | 453(52.1) | |
| | 60대 이상 | 8(1.8) | 38(8.6) | 44(9.9) | 207(46.6) | 147(33.1) | |
| | 전체 | 22(0.4) | 115(2.2) | 314(6.1) | 2,213(42.9) | 2,497(48.4) | |
| 지 역 | 과천 | 0(0.0) | 12(7.6) | 21(13.4) | 88(56.1) | 36(22.9) | |
| | 광명 | 1(0.6) | 5(3.1) | 23(14.4) | 82(51.3) | 49(30.6) | |
| | 광주 | 4(1.2) | 4(1.2) | 21(6.1) | 123(35.9) | 191(55.7) | |
| | 김포 | 1(0.4) | 0(0.0) | 5(2.2) | 75(33.3) | 144(64.0) | |
| | 군포 | 0(0.0) | 11(7.1) | 17(10.9) | 88(56.4) | 40(25.6) | |
| | 부천 | 0(0.0) | 3(0.6) | 17(3.6) | 207(44.0) | 243(51.7) | |
| | 성남 | 0(0.0) | 8(1.9) | 10(2.4) | 138(33.3) | 258(62.3) | |
| | 수원 | 1(0.4) | 1(0.4) | 9(3.6) | 92(36.8) | 147(58.8) | |
| | 시흥 | 1(0.6) | 13(7.5) | 23(13.2) | 104(59.8) | 33(19.0) | |
| | 안산 | 2(0.6) | 2(0.6) | 9(2.8) | 154(43.1) | 190(53.2) | |
| | 안성 | 1(0.3) | 19(4.9) | 43(11.1) | 184(47.3) | 142(36.5) | |
| | 안양 | 0(0.0) | 4(1.6) | 9(3.6) | 78(31.0) | 161(63.9) | |
| | 양평 | 1(0.7) | 2(1.3) | 3(2.0) | 57(38.3) | 86(57.7) | |
| | 여주 | 1(0.6) | 11(7.1) | 26(16.7) | 83(53.2) | 35(22.4) | |
| | 오산 | 1(0.6) | 4(2.5) | 29(17.8) | 71(43.6) | 58(35.6) | |
| | 용인 | 2(0.9) | 1(0.4) | 6(2.7) | 77(34.1) | 140(61.9) | |
| | 의왕 | 0(0.0) | 0(0.0) | 10(3.9) | 106(40.9) | 143(55.2) | |
| | 이천 | 2(1.3) | 4(2.6) | 7(4.6) | 72(47.4) | 67(44.1) | |
| | 평택 | 2(1.1) | 1(0.5) | 3(1.6) | 69(37.1) | 111(59.7) | |
| | 하남 | 2(0.6) | 3(0.9) | 11(3.2) | 158(46.3) | 167(49.0) | |
| 화성 | 0(0.0) | 7(3.5) | 15(7.5) | 114(57.3) | 63(31.7) | | |
| 전체 | 22(0.4) | 115(2.2) | 317(6.1) | 2,220(42.9) | 2,504(48.4) | | |

*p<.05 **p<.01 ***p<.001

〈표 7〉에서 결과를 보면 3번 문항인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여성이 ‘매우 그렇다’ 53.5%, ‘그렇다’ 41.4%로 응답이 매우 치우쳐 있지만, 남성의 경우 ‘그렇다’ 45.1%, ‘매우 그렇다’ 39.8%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한 비율이 남성 15.1%로 이 세 가지 여성 응답자 합계 비율 5.1%의 세 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때, 남성의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8%, ‘그렇지 않다’ 8.6%로 다른 연령들과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에 답한 비율은 연령별로 비슷했으며 그 중 ‘매우 그렇다’에 20대 53.1%, 30대에서는 49.8%, 40대에서는 52.8%, 50대에서는 52.1%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60대에서는 33.1%에 불과하고 이는 20대에 비하여 약 20.0%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대가 60대 이상 응답자들 보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60대 이상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용인, 의왕, 평택 11개 도시는 ‘매우 그렇다’에 50%가 넘는 응답율을 보인 반면 과천, 김포, 시흥, 여주 4개시의 응답자는 20% 전후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에 답변을 하여 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표 8.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4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10(0.3) | 33(1.0) | 109(3.3) | 1,158(35.2) | 1,978(60.2) | 130.872 (4) *** |
| | 남성 | 4(0.2) | 35(1.9) | 149(8.0) | 828(44.3) | 851(45.6) | |
| | 전체 | 14(0.3) | 68(1.3) | 258(5.0) | 1,986(38.5) | 2,829(54.9) | |
| 연 령 | 20대 | 4(0.3) | 10(0.7) | 70(5.1) | 469(34.4) | 809(59.4) | 207.523 (16) *** |
| | 30대 | 1(0.1) | 6(0.6) | 40(4.0) | 378(37.9) | 572(57.4) | |
| | 40대 | 3(0.2) | 10(0.8) | 51(4.0) | 460(35.9) | 756(59.1) | |
| | 50대 | 3(0.3) | 16(1.5) | 43(4.0) | 490(45.7) | 521(48.6) | |
| | 60대 이상 | 2(0.5) | 25(5.7) | 55(12.5) | 201(45.6) | 158(35.8) | |
| | 전체 | 13(0.3) | 67(1.3) | 259(5.0) | 1,998(38.8) | 2,816(54.6) | |
| 지 역 | 과천 | 0(0.0) | 3(1.9) | 8(5.1) | 68(43.3) | 78(49.7) | |
| | 광명 | 0(0.0) | 1(0.6) | 9(5.6) | 76(47.5) | 74(46.3) | |
| | 광주 | 2(0.6) | 6(1.7) | 13(3.8) | 132(38.4) | 191(55.5) | |
| | 군포 | 0(0.0) | 1(0.4) | 6(2.7) | 69(30.8) | 148(66.1) | |
| | 김포 | 0(0.0) | 1(0.6) | 5(3.2) | 59(37.8) | 91(58.3) | |

| 구 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부천 | 1(0.2) | 3(0.6) | 20(4.3) | 190(40.8) | 252(54.1) | |
| 성남 | 1(0.2) | 5(1.2) | 9(2.2) | 133(32.3) | 264(64.1) | |
| 수원 | 1(0.4) | 1(0.4) | 8(3.2) | 90(36.0) | 150(60.0) | |
| 시흥 | 0(0.0) | 2(1.1) | 23(13.2) | 84(48.3) | 65(37.4) | |
| 안산 | 1(0.3) | 2(0.6) | 12(3.4) | 140(39.5) | 199(56.2) | |
| 안성 | 0(0.0) | 12(3.1) | 31(7.9) | 173(44.4) | 174(44.6) | |
| 안양 | 0(0.0) | 3(1.2) | 12(4.8) | 79(31.3) | 158(62.7) | |
| 양평 | 1(0.7) | 1(0.7) | 7(4.7) | 53(35.6) | 87(58.4) | |
| 여주 | 0(0.0) | 9(5.8) | 26(16.7) | 79(50.6) | 42(26.9) | |
| 오산 | 0(0.0) | 2(1.2) | 16(9.8) | 60(36.8) | 85(52.1) | |
| 용인 | 0(0.0) | 4(1.8) | 8(3.5) | 67(29.6) | 147(65.0) | |
| 의왕 | 2(0.8) | 4(1.5) | 13(5.0) | 93(35.9) | 147(56.8) | |
| 이천 | 3(2.0) | 5(3.3) | 10(6.6) | 65(43.0) | 68(45.0) | |
| 평택 | 0(0.0) | 0(0.0) | 4(2.1) | 60(32.1) | 123(65.8) | |
| 하남 | 2(0.6) | 3(0.9) | 13(3.8) | 141(41.2) | 183(53.5) | |
| 화성 | 0(0.0) | 1(0.5) | 4(2.0) | 93(46.7) | 101(50.8) | |
| 전체 | 14(0.3) | 69(1.3) | 257(5.0) | 2,004(38.8) | 2,827(54.7) | |

*p<.05 **p<.01 ***p<.001

〈표 8〉에서 4번 문항인 ‘이성교제 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폭력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 ‘매우 그렇다’의 경우 여성 60.2%, 남성 45.6%이고, ‘그렇다’의 경우 여성 35.2%, 남성 44.3%로 남녀 모두 이 문항에 동의는 하지만 여성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아 더 강력하게 이 문항에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12.5%로 다른 연령들과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답한 비율은 비슷했으나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35.8%, 20대 응답자들은 59.4%로 약 23.6%정도 차이를 보였다. 20대가 60대 이상 응답자들 보다 ‘이성교제 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폭력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광명, 시흥, 여주의 경우, ‘그렇다’에 47.5, 48.3%, 50.6%로 빈도수가 1위인 반면, ‘매우 그렇다’에서 46.3%, 37.4%, 26.9%로 빈도수 2위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표 9.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5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547(16.8) | 527(16.2) | 420(12.9) | 1,052(32.4) | 704(21.4) | 49.265 (4) *** |
| | 남성 | 318(17.2) | 297(16.1) | 343(18.6) | 605(32.8) | 384(15.4) | |
| | 전체 | 865(17.0) | 824(16.2) | 763(15.0) | 1,657(32.5) | 988(19.4) | |
| 연 령 | 20대 | 296(21.9) | 200(14.8) | 274(20.2) | 368(27.2) | 216(16.0) | 143.137 (16) *** |
| | 30대 | 149(15.1) | 162(16.4) | 171(17.3) | 329(33.4) | 17.5(17.7) | |
| | 40대 | 206(16.3) | 229(18.1) | 148(11.7) | 392(31.0) | 290(22.9) | |
| | 50대 | 169(16.0) | 171(16.2) | 118(11.2) | 385(36.5) | 212(20.1) | |
| | 60대 이상 | 40(9.2) | 59(13.6) | 55(12.7) | 182(42.0) | 97(22.4) | |
| | 전체 | 860(16.9) | 821(16.1) | 766(15.0) | 1,656(32.5) | 990(19.4) | |
| 지 역 | 과천 | 5(3.2) | 27(17.2) | 40(25.5) | 69(43.9) | 16(10.2) | |
| | 광명 | 23(14.6) | 12(7.6) | 49(31.0) | 63(39.9) | 11(7.0) | |
| | 광주 | 58(17.4) | 46(13.8) | 41(12.3) | 110(33.0) | 78(23.4) | |
| | 군포 | 35(16.1) | 38(17.5) | 15(6.9) | 71(32.7) | 58(26.7) | |
| | 김포 | 5(3.2) | 14(9.0) | 63(40.4) | 61(39.1) | 13(8.3) | |
| | 부천 | 100(21.5) | 80(17.2) | 41(8.8) | 157(33.8) | 87(18.7) | |
| | 성남 | 89(21.9) | 74(18.2) | 39(9.6) | 111(27.3) | 94(23.1) | |
| | 수원 | 46(18.7) | 30(12.2) | 27(11.0) | 92(37.4) | 51(20.7) | |
| | 시흥 | 9(5.2) | 26(14.9) | 54(31.0) | 61(35.1) | 24(13.8) | |
| | 안산 | 48(13.8) | 66(18.9) | 20(5.7) | 131(37.5) | 84(24.1) | |
| | 안성 | 38(9.8) | 48(12.3) | 71(18.3) | 148(38.0) | 84(21.6) | |
| | 안양 | 43(17.3) | 31(12.5) | 35(14.1) | 71(28.6) | 68(27.4) | |
| | 양평 | 23(15.8) | 28(19.2) | 12(8.2) | 58(39.7) | 25(17.1) | |
| | 여주 | 55(35.3) | 53(34.0) | 36(23.1) | 10(6.4) | 2(1.3) | |
| | 오산 | 17(10.7) | 37(23.3) | 58(36.5) | 30(18.9) | 17(10.7) | |
| | 용인 | 49(21.8) | 34(15.1) | 26(11.6) | 66(29.3) | 50(22.2) | |
| | 의왕 | 48(18.5) | 50(19.3) | 17(6.6) | 94(36.3) | 50(19.3) | |
| | 이천 | 22(14.8) | 21(14.1) | 13(8.7) | 59(39.6) | 34(22.8) | |
| | 평택 | 41(22.2) | 26(14.1) | 9(4.9) | 55(29.7) | 54(29.2) | |
| | 하남 | 75(22.5) | 65(19.5) | 30(9.0) | 99(29.6) | 65(19.5) | |
| 화성 | 36(18.2) | 27(13.6) | 64(32.3) | 47(23.7) | 24(12.1) | | |
| 전체 | 865(16.9) | 833(16.3) | 760(14.9) | 1,663(32.5) | 989(19.4) | | |

*p<.05 **p<.01 ***p<.001

〈표 9〉에서 5번 문항인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 ‘매우 그렇다’를 제외한 응답에는 비율이 비슷했지만 ‘매우 그렇다’의 경우 여성 21.4%, 남성 15.4%로, 여성이 남성보다 5번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치우치게 나온 반면,

6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은 모든 항목에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20대의 경우에 성폭력예방교육의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렇다'에 16.0%, '그렇다'에 27.2%, '보통이다'에 20.2%가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14.8%,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21.9%에 불과한 것을 보면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에 대한 문항은 20대마저도 혼란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순간적인 성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남성의 지배욕과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생각이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20대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6.9%, '그렇지 않다' 16.3%, '보통이다' 14.9%, '그렇다' 32.5% '매우 그렇다'에 19.4%가 동의하는 것을 볼 때 60대의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응답 빈도수를 살펴보자면 지역간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1개 시 중 4개 시를 제외하고 '그렇다'가 첫 번째 빈도수를 보이는 반면, 김포, 오산, 화성 지역의 첫 번째 빈도수가 높은 응답은 '보통이다'로 40.4%, 36.5%, 32.3%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빈도수가 높은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천, 하남, '그렇지 않다'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보통이다'에 과천, 광명, 시흥, '그렇다'에 김포, 화성, '매우 그렇다'에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인양, 용인, 의왕, 이천, 평택이 각각 응답하여 문항 5.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에 대한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6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772(23.6) | 1,573(48.1) | 457(14.0) | 350(10.7) | 118(3.6) | 69.698 (4) *** |
| | 남성 | 298(16.1) | 850(46.0) | 372(20.1) | 239(12.9) | 89(4.8) | |
| | 전체 | 1070(20.9) | 2,423(47.3) | 829(16.2) | 589(11.5) | 207(4.0) | |
| 연 령 | 20대 | 329(24.3) | 558(41.2) | 307(22.7) | 109(8.1) | 50(3.7) | 237.714 (16) *** |
| | 30대 | 201(20.3) | 465(47.0) | 173(17.5) | 107(10.8) | 43(4.3) | |
| | 40대 | 276(21.6) | 686(53.6) | 170(13.3) | 111(8.7) | 36(2.8) | |
| | 50대 | 208(19.6) | 531(50.1) | 129(12.2) | 148(14.0) | 44(4.2) | |
| | 60대 이상 | 54(12.4) | 185(42.4) | 51(11.7) | 113(25.9) | 33(7.6) | |
| | 전체 | 1,068(20.9) | 2,425(47.4) | 830(16.2) | 588(11.5) | 206(4.0) | |
| 지 역 | 과천 | 13(8.3) | 67(42.7) | 39(24.8) | 29(18.5) | 9(5.7) | |
| | 광명 | 41(25.6) | 45(28.1) | 48(30.0) | 23(14.4) | 3(1.9) | |

| 구 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광주 | 65(19.2) | 158(46.7) | 48(14.2) | 45(13.3) | 22(6.5) | |
| 군포 | 55(24.9) | 121(54.8) | 17(7.7) | 20(9.0) | 8(3.6) | |
| 김포 | 15(9.7) | 35(22.6) | 62(40.0) | 61(26.5) | 2(1.3) | |
| 부천 | 106(23.0) | 247(53.6) | 50(10.8) | 44(9.5) | 14(3.0) | |
| 성남 | 102(24.9) | 212(51.7) | 46(11.2) | 32(7.8) | 18(4.4) | |
| 수원 | 51(20.7) | 118(48.0) | 33(13.4) | 28(11.4) | 16(6.5) | |
| 시흥 | 13(7.5) | 71(40.8) | 47(27.0) | 26(14.9) | 17(9.8) | |
| 안산 | 66(18.8) | 203(57.7) | 29(8.2) | 42(11.9) | 12(3.4) | |
| 안성 | 64(16.5) | 173(44.5) | 87(22.4) | 49(12.6) | 16(4.1) | |
| 안양 | 60(23.9) | 128(51.0) | 33(13.1) | 21(8.4) | 9(3.6) | |
| 양평 | 32(21.8) | 80(54.4) | 16(10.9) | 12(8.2) | 7(4.8) | |
| 여주 | 48(30.8) | 74(47.4) | 28(17.9) | 6(3.8) | 0(0.0) | |
| 오산 | 24(14.7) | 75(46.0) | 45(27.6) | 15(9.2) | 4(2.5) | |
| 용인 | 58(25.7) | 100(44.2) | 34(15.0) | 23(10.2) | 11(4.9) | |
| 의왕 | 55(21.2) | 133(51.4) | 33(12.7) | 28(10.8) | 10(3.9) | |
| 이천 | 25(16.7) | 58(38.7) | 22(14.7) | 34(22.7) | 11(7.3) | |
| 평택 | 49(26.3) | 92(49.5) | 19(10.2) | 17(9.1) | 9(4.8) | |
| 하남 | 78(23.1) | 187(55.3) | 38(11.2) | 30(8.9) | 5(1.5) | |
| 화성 | 48(24.6) | 57(29.2) | 58(29.7) | 26(13.3) | 6(3.1) | |
| 전체 | 1,068(20.8) | 2,434(47.4) | 832(16.2) | 591(11.5) | 209(4.1) | |

*p<.05 **p<.01 ***p<.001

〈표 10〉에서 6번 문항인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 ‘그렇지 않다’의 경우 여성 48.1%, 남성 46.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여성 23.6%, 남성 16.1%로 남녀 모두 이 문항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여성이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아 더 강하게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은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인 여성이 친척, 가족, 친구 또는 보호자,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동네사람 등과 같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즉,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25.9%로 다른 연령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전 연령대 별로 높은 것을 보니 문항 6번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한 반면 광명, 김포, 화성지역은 ‘보통이다’

에 30.0%, 40.0%, 29.7%가 1위 답변을 하였고, 과천 24.8%, 시흥 27.0%, 안성 22.4%, 오산 27.6%가 ‘보통이다’에 답하였으며, 김포 26.5%, 이천 22.7%로 ‘그렇다’에 답을 하여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11.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7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924(28.2) | 1,374(42.0) | 391(11.9) | 463(14.1) | 122(3.7) | 103.320 (4) *** |
| | 남성 | 351(18.9) | 716(38.5) | 335(18.0) | 348(18.7) | 108(5.8) | |
| | 전체 | 1,275(24.8) | 2,090(40.7) | 726(14.1) | 811(15.8) | 230(4.5) | |
| 연 령 | 20대 | 415(30.4) | 540(39.6) | 224(16.4) | 130(9.5) | 54(4.0) | 358.947 (16) *** |
| | 30대 | 265(26.6) | 443(44.4) | 149(14.9) | 111(11.1) | 29(2.9) | |
| | 40대 | 338(26.5) | 564(44.3) | 161(12.6) | 165(13.0) | 46(3.6) | |
| | 50대 | 208(19.6) | 410(38.7) | 133(12.5) | 259(24.4) | 50(4.7) | |
| | 60대 이상 | 38(8.7) | 145(33.1) | 54(12.3) | 151(34.5) | 50(11.4) | |
| | 전체 | 1,264(24.6) | 2,102(41.0) | 721(14.0) | 816(15.9) | 229(4.5) | |
| 지 역 | 과천 | 15(9.6) | 74(47.4) | 40(25.6) | 18(11.5) | 9(5.8) | |
| | 광명 | 49(30.6) | 42(26.3) | 33(20.6) | 32(20.0) | 4(2.5) | |
| | 광주 | 74(21.7) | 134(39.3) | 50(14.7) | 49(14.4) | 34(10.0) | |
| | 군포 | 67(29.9) | 103(46.0) | 19(8.5) | 29(12.9) | 6(2.7) | |
| | 김포 | 24(15.4) | 61(39.1) | 42(26.9) | 28(17.9) | 1(0.6) | |
| | 부천 | 135(28.9) | 200(42.8) | 36(7.7) | 86(18.4) | 10(2.1) | |
| | 성남 | 125(30.5) | 178(43.4) | 31(7.6) | 54(13.2) | 22(5.4) | |
| | 수원 | 59(23.7) | 104(41.8) | 36(14.5) | 37(14.9) | 13(5.2) | |
| | 시흥 | 24(13.8) | 73(42.0) | 38(21.8) | 27(15.5) | 12(6.9) | |
| | 안산 | 83(23.5) | 156(44.2) | 29(8.2) | 70(19.8) | 15(4.2) | |
| | 안성 | 81(20.9) | 161(41.5) | 67(17.3) | 60(15.5) | 19(4.9) | |
| | 안양 | 71(28.4) | 101(40.4) | 34(13.6) | 33(13.2) | 11(4.4) | |
| | 양평 | 31(21.1) | 65(44.2) | 19(12.9) | 25(17.0) | 7(4.8) | |
| | 여주 | 45(28.8) | 63(40.4) | 36(23.1) | 12(7.7) | 0(0.0) | |
| | 오산 | 29(17.8) | 63(38.7) | 41(25.2) | 26(16.0) | 4(2.5) | |
| | 용인 | 59(26.1) | 92(40.7) | 33(14.6) | 28(12.4) | 14(6.2) | |
| | 의왕 | 84(32.4) | 108(41.7) | 19(7.3) | 39(15.1) | 9(3.5) | |
| | 이천 | 26(17.4) | 50(33.6) | 13(8.7) | 44(29.5) | 16(10.7) | |
| | 평택 | 55(29.9) | 74(40.2) | 18(9.8) | 27(14.7) | 10(5.4) | |
| | 하남 | 79(23.4) | 139(41.1) | 37(10.9) | 73(21.6) | 10(3.0) | |
| 화성 | 50(25.1) | 64(32.2) | 54(27.1) | 24(12.1) | 7(3.5) | | |
| 전체 | 1,265(24.6) | 2,105(40.9) | 725(14.1) | 821(15.9) | 233(4.5) | | |

*p<.05 **p<.01 ***p<.001

〈표 11〉에서 7번 문항인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여성 42.0%, 남성 38.5%로 비슷하지만,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에서 보면 여성 28.2%, 남성 18.9%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눈빛과 말투,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사람은 공포 때문에 저항하기가 어려우며,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 성폭력의 상태에서 끝까지 저항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성들이 공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60대 이상 응답자들 8.7%, 20대 응답자들 30.4%로 큰 비율 차이가 있었다. 또, 모든 연령이 문항 7번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5%, 11.4%로 다른 응답자들 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문항 7번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 비율이 높으나 과천, 김포, 시흥, 오산, 화성 지역은 ‘보통이다’와 이천 지역이 ‘그렇다’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표 12.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8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602(18.3) | 992(30.2) | 404(12.3) | 775(23.6) | 512(15.6) | 44.845 (4) *** |
| | 남성 | 287(15.4) | 615(33.0) | 318(17.1) | 434(23.3) | 208(11.2) | |
| | 전체 | 889(17.3) | 1,607(31.2) | 722(14.0) | 1,209(23.5) | 720(14.0) | |
| 연 령 | 20대 | 271(19.9) | 460(33.8) | 260(19.1) | 207(15.2) | 161(11.8) | 164.168 (16) *** |
| | 30대 | 163(16.3) | 312(31.3) | 151(15.1) | 226(22.7) | 145(14.5) | |
| | 40대 | 245(19.2) | 379(29.7) | 144(11.3) | 322(25.2) | 188(14.7) | |
| | 50대 | 165(15.4) | 322(30.1) | 122(11.4) | 297(27.8) | 162(15.2) | |
| | 60대 이상 | 41(9.2) | 133(30.0) | 43(9.7) | 162(36.5) | 65(14.6) | |
| | 전체 | 885(17.2) | 1,606(31.2) | 720(14.0) | 1,214(23.6) | 721(14.0) | |
| 지 역 | 과천 | 11(7.0) | 68(43.3) | 47(29.9) | 22(14.0) | 9(5.7) | |
| | 광명 | 52(33.1) | 44(28.0) | 22(14.0) | 31(19.7) | 8(5.1) | |
| | 광주 | 37(10.8) | 106(30.9) | 33(9.6) | 98(28.6) | 69(20.1) | |
| | 군포 | 54(24.1) | 65(29.0) | 22(9.8) | 53(23.7) | 30(13.4) | |
| | 김포 | 19(12.2) | 50(32.1) | 40(25.6) | 44(28.2) | 3(1.9) | |
| | 부천 | 81(17.3) | 149(31.8) | 55(11.7) | 116(24.7) | 68(14.5) | |
| | 성남 | 88(21.4) | 119(29.0) | 49(11.9) | 78(19.0) | 77(18.7) | |
| | 수원 | 39(15.7) | 78(31.5) | 30(12.1) | 60(24.2) | 41(16.5) |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시흥 | 23(13.2) | 62(35.6) | 28(16.1) | 41(23.6) | 20(11.5) | |
| | 안산 | 55(15.4) | 94(27.0) | 42(11.8) | 101(28.4) | 62(17.4) | |
| | 안성 | 54(13.9) | 112(28.9) | 71(18.3) | 95(24.5) | 56(14.4) | |
| | 안양 | 52(20.6) | 88(34.9) | 35(13.9) | 44(17.5) | 33(13.1) | |
| | 양평 | 18(12.1) | 38(25.5) | 7(4.7) | 56(37.6) | 30(20.1) | |
| | 여주 | 50(32.1) | 82(52.6) | 19(12.2) | 4(2.6) | 1(0.6) | |
| | 오산 | 22(13.4) | 71(43.3) | 35(21.3) | 23(14.0) | 13(7.9) | |
| | 용인 | 52(23.0) | 68(30.1) | 38(16.8) | 39(17.3) | 29(12.8) | |
| | 의왕 | 43(16.7) | 62(24.0) | 24(9.3) | 82(31.8) | 47(18.2) | |
| | 이천 | 20(13.3) | 38(25.3) | 15(10.0) | 50(33.3) | 27(18.0) | |
| | 평택 | 24(12.9) | 38(20.4) | 30(16.1) | 60(32.3) | 34(18.3) | |
| | 하남 | 54(15.8) | 101(29.6) | 39(11.4) | 95(27.9) | 52(15.2) | |
| | 화성 | 43(21.6) | 81(40.7) | 45(22.6) | 22(11.1) | 8(4.0) | |
| | 전체 | 891(17.3) | 1,616(31.3) | 726(14.1) | 1,214(23.5) | 717(13.9) | |

*p<.05 **p<.01 ***p<.001

〈표 12〉에서 8번 문항인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병자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 첫 번째 빈도수를 보인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여성 30.2%, 남성 33% 이고, ‘매우 그렇다’ 응답에서 보면 여성 15.6%, 남성 11.2%로 남녀 간 8번 문항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비율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30.2%, 33.0%로 높은 것으로 보아 8번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남녀 응답자들이 많음을 볼 수 있음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두 번째 빈도수가 높은 문항은 ‘그렇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성폭력은 정신이상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문화 및 관행들 속에서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성별, 나이, 계급, 성적 정체성, 종교, 인종, 직업, 교육 정도, 용모에 상관없이 누구도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볼 때 남녀 전체에서 ‘그렇다’ 23.5%, ‘매우 그렇다’ 14.0%의 수치는 심히 우려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그렇다’에 60대 이상 응답자들 36.5%, 20대 응답자들 15.2%로 큰 비율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을 제외한 연령들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다른 응답의 비율보다 높지만,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다른 연령층에 비해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문항 8번에 동의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7.3%, ‘그렇지 않다’ 31.3%, ‘보통이다’ 14.1%, ‘그렇다’ 23.5%, ‘매우 그렇다’ 13.9%에 각각 답하여 이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에 첫 번째 빈도수가 높은 안산, 양평, 의왕, 이천, 평택과

두 번째 빈도수가 높은 광주, 김포, 부천, 수원, 시흥, 안성, 하남 지역은 이 문항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많은 성폭력 가해자는 ‘흔히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각 응답에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표 13.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9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162(4.9) | 406(12.4) | 607(18.5) | 1,612(49.1) | 498(15.2) | 31,806 (4) *** |
| | 남성 | 126(6.8) | 255(13.7) | 424(22.8) | 825(44.3) | 231(12.4) | |
| | 전체 | 288(5.6) | 661(12.8) | 1,031(20.0) | 2,437(47.4) | 729(14.2) | |
| 연 령 | 20대 | 125(9.2) | 199(14.6) | 381(28.0) | 495(36.4) | 160(11.8) | 187,934 (16) *** |
| | 30대 | 4.6(4.6) | 112(11.3) | 211(21.2) | 482(48.5) | 143(14.4) | |
| | 40대 | 53(4.1) | 157(12.3) | 212(16.6) | 661(51.6) | 197(15.4) | |
| | 50대 | 43(4.0) | 137(12.8) | 158(14.8) | 562(52.5) | 171(16.0) | |
| | 60대 이상 | 17(3.7) | 53(12.0) | 66(15.0) | 250(56.8) | 54(12.3) | |
| | 전체 | 284(5.5) | 658(12.8) | 1,028(20.0) | 2,450(47.6) | 725(14.1) | |
| 지 역 | 과천 | 5(3.2) | 40(25.5) | 52(33.1) | 52(33.1) | 8(5.1) | |
| | 광명 | 6(3.8) | 12(7.5) | 30(18.8) | 47(29.4) | 65(40.6) | |
| | 광주 | 14(4.1) | 28(8.2) | 59(17.3) | 190(55.7) | 50(14.7) | |
| | 군포 | 11(4.9) | 18(8.0) | 25(11.2) | 132(58.9) | 38(17.0) | |
| | 김포 | 10(6.4) | 42(26.9) | 56(35.9) | 43(27.6) | 5(3.2) | |
| | 부천 | 33(7.1) | 54(11.6) | 63(13.5) | 249(53.3) | 68(14.6) | |
| | 성남 | 21(5.1) | 43(10.5) | 58(14.1) | 220(53.5) | 69(16.8) | |
| | 수원 | 12(4.8) | 25(10.1) | 38(15.3) | 143(57.7) | 30(12.1) | |
| | 시흥 | 9(5.2) | 48(27.6) | 62(35.6) | 37(21.3) | 18(10.3) | |
| | 안산 | 18(5.1) | 33(9.3) | 42(11.9) | 204(57.6) | 57(16.1) | |
| | 안성 | 22(5.6) | 78(19.9) | 83(21.2) | 162(41.4) | 46(11.8) | |
| | 안양 | 21(8.4) | 33(13.2) | 43(17.2) | 119(47.6) | 34(13.6) | |
| | 양평 | 8(5.4) | 9(6.1) | 23(15.6) | 88(59.9) | 19(12.9) | |
| | 여주 | 9(5.8) | 22(14.1) | 95(60.9) | 26(16.7) | 4(2.6) | |
| | 오산 | 10(6.1) | 38(23.2) | 59(36.0) | 50(30.5) | 7(4.3) | |
| | 용인 | 27(11.9) | 26(11.5) | 43(19.0) | 92(40.7) | 38(16.8) | |
| | 의왕 | 11(4.2) | 25(9.7) | 53(20.5) | 144(55.6) | 26(10.0) | |
| | 이천 | 8(5.4) | 14(9.5) | 18(12.2) | 83(56.1) | 25(16.9) | |
| | 평택 | 14(7.5) | 20(10.8) | 23(12.4) | 102(54.8) | 27(14.5) | |
| | 하남 | 11(3.2) | 33(9.6) | 61(17.8) | 191(55.7) | 47(13.7) | |
| | 화성 | 7(3.5) | 23(11.6) | 45(22.6) | 87(43.7) | 37(18.6) | |
| | 전체 | 287(5.6) | 664(12.9) | 1,031(20.0) | 2,461(47.7) | 718(13.9) | |

*p<.05 **p<.01 ***p<.001

〈표 13〉에서 9번 문항인 ‘성폭력을 당하면 2차 피해(보복, 비난 등)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여성이 ‘보통이다’ 18.5%, ‘그렇다’ 49.1%, ‘매우 그렇다’ 15.2%로 응답이 매우 치우쳐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22.8%, ‘그렇다’ 44.3%, ‘매우 그렇다’ 12.4%로 여성과 남성의 분포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고 세가지 응답에 균일하게 분포했다.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임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보통이다’ 18.5%, ‘그렇다’ 49.1%, ‘매우 그렇다’ 15.2%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법적 고소가 중요한데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연령 구분에서는 20대 응답자가 ‘보통이다’ 28.0%, ‘그렇다’ 36.4%, ‘매우 그렇다’ 11.8%로 다른 연령층 보다 비율이 균일하게 분포했고, ‘그렇다’의 경우 60대 이상 56.8%, 20대 36.4%로 문항 9번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20대 응답자들 보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그렇다’ 47.4%의 첫 번째 빈도수를 보이며, ‘보통이다’ 20.2%, ‘매우 그렇다’ 13.9%로 순서대로 빈도수가 나타나지만 과천 25.5%, 시흥 27.6%로 이들 지역은 ‘그렇지 않다’가 두 번째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4.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0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223(6.8) | 542(16.5) | 512(15.5) | 1,325(40.2) | 691(21.0) | 29.613 (4) *** |
| | 남성 | 94(5.0) | 245(13.1) | 374(20.0) | 737(39.5) | 416(22.3) | |
| | 전체 | 317(6.1) | 787(15.3) | 886(17.2) | 2,062(40.0) | 1,107(21.5) | |
| 연 령 | 20대 | 129(9.5) | 243(17.8) | 367(26.9) | 397(29.1) | 227(16.7) | 352.714(16) *** |
| | 30대 | 50(5.0) | 165(16.5) | 189(19.0) | 369(37.0) | 224(22.5) | |
| | 40대 | 69(5.4) | 225(17.6) | 184(14.4) | 537(42.0) | 265(20.7) | |
| | 50대 | 52(4.9) | 117(10.9) | 109(10.2) | 543(50.7) | 251(23.4) | |
| | 60대 이상 | 12(2.7) | 31(7.0) | 31(7.0) | 230(51.9) | 139(31.4) | |
| | 전체 | 312(6.1) | 781(15.2) | 880(17.1) | 230(51.9) | 139(31.4) | |
| 지 역 | 과천 | 1(0.6) | 6(3.8) | 30(19.1) | 55(35.0) | 65(41.4) | |
| | 광명 | 4(2.5) | 6(3.8) | 11(6.9) | 44(27.7) | 94(59.1) | |
| | 광주 | 20(5.8) | 49(14.3) | 58(16.9) | 163(47.5) | 53(15.5) | |
| | 군포 | 10(4.5) | 46(20.6) | 31(13.9) | 97(43.5) | 39(17.5) |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김포 | 0(0.0) | 4(2.6) | 22(14.1) | 26(16.7) | 104(66.7) | |
| | 부천 | 55(11.7) | 94(20.0) | 77(16.4) | 193(41.1) | 51(10.9) | |
| | 성남 | 38(9.2) | 97(23.5) | 68(16.5) | 152(36.8) | 58(14.0) | |
| | 수원 | 14(5.6) | 44(17.7) | 51(20.5) | 101(40.6) | 39(15.7) | |
| | 시흥 | 2(1.1) | 8(4.6) | 32(18.4) | 60(34.5) | 72(41.4) | |
| | 안산 | 22(6.2) | 62(17.5) | 43(12.1) | 186(52.4) | 42(11.8) | |
| | 안성 | 18(4.6) | 56(14.3) | 68(17.3) | 151(38.5) | 99(25.3) | |
| | 안양 | 31(12.3) | 52(20.6) | 54(21.4) | 84(33.3) | 31(12.3) | |
| | 양평 | 7(4.7) | 26(17.6) | 24(16.2) | 69(46.6) | 22(14.9) | |
| | 여주 | 4(2.6) | 19(12.2) | 78(50.0) | 42(26.9) | 13(8.3) | |
| | 오산 | 5(3.0) | 11(6.7) | 29(17.7) | 71(43.3) | 48(29.3) | |
| | 용인 | 28(12.4) | 44(19.5) | 54(23.9) | 76(33.6) | 24(10.6) | |
| | 의왕 | 13(5.0) | 49(18.9) | 37(14.3) | 121(46.7) | 39(15.1) | |
| | 이천 | 10(6.7) | 24(16.0) | 20(13.3) | 72(48.0) | 24(16.0) | |
| | 평택 | 10(5.4) | 39(21.1) | 33(17.8) | 71(38.4) | 32(17.3) | |
| | 하남 | 23(6.7) | 43(12.6) | 53(15.5) | 167(49.0) | 55(16.1) | |
| | 화성 | 1(0.5) | 7(3.5) | 13(6.5) | 78(39.2) | 100(50.3) | |
| | 전체 | 316(6.1) | 786(15.2) | 886(17.1) | 2,079(40.2) | 1,104(21.3) | |

*p<.05 **p<.01 ***p<.001

〈표 14〉에서 10번 문항인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남녀 모두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비율이 많이 분포하지만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보면 남녀 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문항 10번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성관계를 위하여 모텔투숙을 선택하는 커플도 있겠으나 가령 귀가 차량이 끊긴 밤늦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모텔 투숙을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텔 투숙 선택이 곧 성관계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모텔 투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령 구분에서는 20대 응답자가 모든 응답에 비율이 고루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응답자들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렇다’의 응답에 20대 29.1%, 30대 37.0%, 40대 42.0%, 50대 50.7%, 60대 51.9%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번 문항에 대한 지역간 편차도 〈표 14〉에서 보듯이 첫번째 빈도수에 ‘매우 그렇다’에 과천, 광명, 김포, 시흥, 화성이 응답한 반면, ‘그렇다’에 첫번째 빈도수에 답변한 곳은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15곳이고 두 번째 빈도수 중 ‘보통이다’는 과천, 수원, 안양, 용인 4곳이며 ‘그렇지 않다’에 답변한 곳은 군포, 부천, 성남,

안산, 양평, 의왕, 이천, 평택 8곳으로 나타나 이는 모텔에 감=성관계라는 등식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모텔 등지에서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텔이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언제,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가 중요하며, '상대방에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성폭력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5.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1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316(9.6) | 593(18.0) | 674(20.5) | 1303(39.7) | 400(12.2) | 22,887 (4) *** |
| | 남성 | 125(6.7) | 318(17.0) | 462(24.7) | 723(38.7) | 239(12.8) | |
| | 전체 | 441(8.6) | 911(17.7) | 1,136(22.0) | 2,026(39.3) | 639(12.4) | |
| 연 령 | 20대 | 183(13.4) | 311(22.8) | 387(28.4) | 364(26.7) | 117(8.6) | 395,831(16) *** |
| | 30대 | 90(9.0) | 189(19.0) | 256(25.7) | 351(35.2) | 110(11.0) | |
| | 40대 | 92(7.2) | 240(18.7) | 259(20.2) | 530(41.3) | 161(12.6) | |
| | 50대 | 60(5.6) | 141(13.1) | 172(16.0) | 548(51.1) | 152(14.2) | |
| | 60대 이상 | 9(2.1) | 26(6.0) | 55(12.6) | 253(58.0) | 93(21.3) | |
| | 전체 | 434(8.4) | 907(17.6) | 1,129(21.9) | 2,046(39.7) | 633(12.3) | |
| 지 역 | 과천 | 3(1.9) | 7(4.5) | 55(35.0) | 60(38.2) | 32(20.4) | |
| | 광명 | 6(3.8) | 6(3.8) | 43(26.9) | 76(47.5) | 29(18.1) | |
| | 광주 | 27(7.8) | 56(16.2) | 61(17.7) | 144(41.7) | 57(16.5) | |
| | 군포 | 30(13.5) | 39(17.5) | 44(19.7) | 85(38.1) | 25(11.2) | |
| | 김포 | 6(3.8) | 32(20.5) | 71(45.5) | 34(21.8) | 31(8.3) | |
| | 부천 | 44(9.4) | 111(23.7) | 79(16.9) | 193(41.2) | 41(8.8) | |
| | 성남 | 62(15.0) | 79(19.2) | 81(19.7) | 135(32.8) | 55(13.3) | |
| | 수원 | 21(8.4) | 45(18.1) | 57(22.9) | 100(40.2) | 26(10.4) | |
| | 시흥 | 15(8.6) | 30(17.2) | 42(24.1) | 65(37.4) | 22(12.6) | |
| | 안산 | 37(10.5) | 51(14.5) | 57(16.2) | 177(50.4) | 29(8.3) | |
| | 안성 | 40(10.2) | 88(22.5) | 79(20.2) | 144(36.8) | 40(10.2) | |
| | 안양 | 19(7.6) | 65(25.9) | 68(27.1) | 72(28.7) | 27(10.8) | |
| | 양평 | 6(4.0) | 21(14.1) | 22(14.8) | 87(58.4) | 13(8.7) | |
| | 여주 | 4(2.6) | 36(23.1) | 63(40.4) | 37(23.7) | 16(10.3) | |
| | 오산 | 9(5.5) | 23(14.1) | 46(28.2) | 59(36.2) | 26(16.0) | |
| | 용인 | 31(13.8) | 43(19.1) | 53(23.6) | 64(28.4) | 34(15.1) | |
| | 의왕 | 25(9.7) | 51(19.8) | 45(17.4) | 116(45.0) | 21(8.1) | |
| | 이천 | 12(8.1) | 23(15.4) | 18(12.1) | 79(53.0) | 17(11.4) | |
| | 평택 | 13(7.0) | 26(13.9) | 36(19.3) | 87(46.5) | 25(13.4) | |
| | 하남 | 20(5.8) | 58(16.9) | 61(17.8) | 157(45.8) | 47(13.7) | |
| 화성 | 9(4.5) | 18(9.0) | 54(27.1) | 77(38.7) | 41(20.6) | | |
| 전체 | 439(8.5) | 908(17.6) | 1,135(22.0) | 2,048(39.6) | 636(12.3) | | |

*p<.05 **p<.01 ***p<.001

〈표 15〉에서 11번 문항인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옷은 성폭력을 유발한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는 남녀 모두 ‘보통이다’, ‘그렇다’에 비율이 많이 분포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보면 남녀 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문항 11번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옷은 성폭력을 유발한다’라는 문항은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 문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성폭력이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폭력과 다르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논리이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으니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 ‘야한 옷차림으로 밤 늦게 다니는 것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술을 먹고 모텔에 남성과 동행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근친 관계나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등 수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들 또한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성폭력 통념에 익숙하다. 여성들이 응답한 ‘보통이다’ 20.5%, ‘그렇다’ 39.7%, ‘매우 그렇다’ 12.2%의 답변은 여성 스스로가 피해자 유발론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령 구분에서는 20대 응답자가 모든 응답에 비율이 고루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응답자들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렇다’의 응답에 20대 26.7%, 30대 35.2%, 40대 41.3%, 50대 51.1%, 60대 58.0%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문항 11번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옷은 성폭력을 유발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과천 ‘전혀 그렇지 않다’ 1.9%, ‘그렇지 않다’ 4.5%, 광명 ‘전혀 그렇지 않다’ 3.8%, ‘그렇지 않다’ 3.8%, 로 두 항목을 합치면 10%미만의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성 ‘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다’ 9.0%, 오산 ‘전혀 그렇지 않다’ 5.5%, ‘그렇지 않다’ 14.1%로 20% 미만의 낮은 답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들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표 16.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2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37(1.1) | 69(2.1) | 256(7.8) | 1,334(40.6) | 1,587(48.3) | 114.312 (4) *** |
| | 남성 | 29(1.6) | 80(4.3) | 272(14.6) | 798(42.9) | 680(36.6) | |
| | 전체 | 66(1.3) | 149(2.9) | 528(10.3) | 2,132(41.5) | 2,267(44.1) | |
| 연 령 | 20대 | 16(1.2) | 44(3.2) | 192(14.1) | 518(38.1) | 589(43.3) | 121.635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30대 | 11(1.1) | 29(2.9) | 92(9.2) | 383(38.4) | 482(48.3) | (16) *** |
| | 40대 | 12(0.9) | 25(2.0) | 89(7.0) | 512(40.2) | 637(50.0) | |
| | 50대 | 14(1.3) | 31(2.9) | 97(9.1) | 505(47.2) | 423(39.5) | |
| | 60대 이상 | 13(3.0) | 20(4.6) | 54(12.4) | 221(50.6) | 129(29.5) | |
| | 전체 | 66(1.3) | 149(2.9) | 524(10.2) | 2,139(41.6) | 2,260(44.0) | |
| 지역 | 과천 | 1(0.6) | 7(4.5) | 16(10.3) | 18(11.5) | 114(73.1) | |
| | 광명 | 6(3.8) | 6(3.8) | 42(26.3) | 58(36.3) | 48(30.0) | |
| | 광주 | 1(0.3) | 8(2.4) | 34(10.0) | 144(42.5) | 152(44.8) | |
| | 군포 | 1(0.4) | 3(1.3) | 13(5.8) | 98(43.8) | 109(48.7) | |
| | 김포 | 1(0.6) | 4(2.6) | 23(14.7) | 26(16.7) | 102(65.4) | |
| | 부천 | 11(2.4) | 24(5.1) | 41(8.8) | 216(46.2) | 176(37.6) | |
| | 성남 | 3(0.7) | 9(2.2) | 18(4.4) | 181(43.8) | 202(48.9) | |
| | 수원 | 7(2.8) | 3(1.2) | 23(9.3) | 115(46.4) | 100(40.3) | |
| | 시흥 | 0(0.0) | 2(1.1) | 27(15.5) | 37(21.3) | 108(62.1) | |
| | 안산 | 5(1.4) | 8(2.3) | 21(6.0) | 178(50.6) | 140(39.8) | |
| | 안성 | 3(0.8) | 13(3.3) | 45(11.5) | 173(44.2) | 157(40.2) | |
| | 안양 | 4(1.6) | 5(2.0) | 22(8.8) | 110(43.8) | 110(43.8) | |
| | 양평 | 1(0.7) | 3(2.0) | 7(4.7) | 76(51.4) | 61(41.2) | |
| | 여주 | 1(0.6) | 4(2.6) | 63(40.4) | 67(42.9) | 21(13.5) | |
| | 오산 | 1(0.6) | 3(1.8) | 27(16.6) | 58(35.6) | 74(45.4) | |
| | 용인 | 3(1.3) | 14(6.3) | 23(10.3) | 88(39.3) | 96(42.9) | |
| | 의왕 | 0(0.0) | 4(1.5) | 14(5.4) | 128(49.4) | 113(43.6) | |
| | 이천 | 3(2.0) | 8(5.4) | 9(6.1) | 83(56.1) | 45(30.4) | |
| | 평택 | 5(2.7) | 7(3.8) | 8(4.3) | 81(43.5) | 85(45.7) | |
| | 하남 | 6(1.8) | 9(2.6) | 32(9.4) | 155(45.5) | 139(40.8) | |
| 화성 | 3(1.5) | 5(2.5) | 22(11.1) | 57(28.6) | 112(56.3) | | |
| 전체 | 66(1.3) | 149(2.9) | 530(10.3) | 2,147(41.6) | 2,264(43.9) | | |

*p<.05 **p<.01 ***p<.001

〈표 16〉에서 12번 문항인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은 ‘그렇다’로 여성 40.6%, 남성 42.9%로 비슷하지만 ‘매우 그렇다’의 경우 여성 48.3%, 남성 36.6%로 문항 12번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에 남성보다 여성이 강력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공포와 불안을 초래하고, 정신적·신체적·성적인 자기 결정권의 침해행위로서, 중대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문제의 문제라는 인식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명제인데 남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령 구분에서는 20대, 30대, 40대는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그렇다’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50대,

60대 이상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그렇다’의 비율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문항 12번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에 대해 20대, 30대, 40대의 연령층이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강력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그렇다’ 41.6%, ‘매우 그렇다’ 43.9%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여주지역의 경우, ‘보통이다’ 40.4%, ‘그렇다’ 42.9%, ‘매우 그렇다’ 13.5%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1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성인식의 변화를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하여야겠다.

〈표 17.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3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86(2.6) | 306(9.3) | 584(17.8) | 1,314(40.0) | 992(30.2) | 231.208 (4) *** |
| | 남성 | 113(6.0) | 330(17.7) | 463(24.8) | 658(35.2) | 304(16.3) | |
| | 전체 | 199(3.9) | 636(12.3) | 1,047(20.3) | 1,972(38.3) | 1,296(25.2) | |
| 연 령 | 20대 | 54(4.0) | 198(14.5) | 379(27.8) | 449(33.0) | 281(20.6) | 173.121 (16) *** |
| | 30대 | 31(3.1) | 108(10.9) | 207(20.8) | 365(36.7) | 283(28.5) | |
| | 40대 | 37(2.9) | 115(9.0) | 204(16.0) | 526(41.2) | 396(31.0) | |
| | 50대 | 40(3.7) | 153(14.3) | 172(16.1) | 446(41.7) | 258(24.1) | |
| | 60대 이상 | 34(7.7) | 69(15.5) | 79(17.8) | 189(42.6) | 73(16.4) | |
| | 전체 | 196(3.8) | 643(12.5) | 1,041(20.2) | 1,975(38.4) | 1,291(25.1) | |
| 지 역 | 과천 | 6(3.8) | 36(22.9) | 76(48.4) | 26(16.6) | 13(8.3) | |
| | 광명 | 11(6.9) | 13(8.1) | 46(28.8) | 50(31.3) | 40(25.0) | |
| | 광주 | 7(2.1) | 29(8.5) | 56(16.4) | 137(40.2) | 112(32.8) | |
| | 군포 | 5(2.2) | 12(5.4) | 27(12.1) | 96(43.0) | 83(37.2) | |
| | 김포 | 8(5.1) | 26(16.7) | 82(52.6) | 34(21.8) | 6(3.8) | |
| | 부천 | 21(4.5) | 75(16.1) | 75(16.1) | 193(41.3) | 103(22.1) | |
| | 성남 | 14(3.4) | 38(9.2) | 63(15.2) | 175(42.3) | 124(30.0) | |
| | 수원 | 6(2.4) | 30(12.1) | 40(16.1) | 107(43.1) | 65(26.2) | |
| | 시흥 | 5(2.9) | 24(13.8) | 61(35.1) | 52(29.9) | 32(18.4) | |
| | 안산 | 8(2.3) | 35(9.9) | 39(11.0) | 175(49.6) | 96(27.2) | |
| | 안성 | 33(8.4) | 61(15.6) | 93(23.8) | 126(32.2) | 78(19.9) | |
| | 안양 | 6(2.4) | 32(12.7) | 65(25.8) | 75(29.8) | 74(29.4) | |
| | 양평 | 6(4.1) | 15(10.1) | 28(18.9) | 63(42.6) | 36(24.3) | |
| | 여주 | 0(0.0) | 16(10.3) | 56(35.9) | 64(41.0) | 20(12.8) | |
| | 오산 | 9(5.5) | 27(16.5) | 44(26.8) | 59(36.0) | 25(15.2) | |
| 용인 | 17(7.6) | 41(18.3) | 47(21.0) | 62(27.7) | 57(25.4) | | |
| 의왕 | 8(3.1) | 23(8.9) | 36(13.9) | 123(47.5) | 69(26.6) | |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이천 | 4(2.7) | 14(9.3) | 13(8.7) | 75(50.0) | 44(29.3) | |
| | 평택 | 3(1.6) | 9(4.8) | 21(11.2) | 92(49.2) | 62(33.2) | |
| | 하남 | 7(2.1) | 51(15.0) | 43(12.6) | 144(42.4) | 95(27.9) | |
| | 화성 | 15(7.5) | 31(15.6) | 39(19.6) | 57(28.6) | 57(28.6) | |
| | 전체 | 199(3.9) | 638(12.4) | 1,050(20.3) | 1,985(38.4) | 1,291(25.0) | |

*p<.05 **p<.01 ***p<.001

〈표 17〉에서 13번 문항인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성 9.3%, 남성 17.7%로 문항 13번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남성이 높았고, ‘매우 그렇다’ 여성 30.2, 남성 16.3로 문항 13번에 동의해 성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약 13.9%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를 합치면 비율이 각각 여성의 경우 29.7%,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48.5%로 나타나 이에 대한 생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구조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에서 성폭력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이 성폭력관련 문제 발생율을 낮출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연령 구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는 60대 이상 7.7%로 가장 높았고, 40대 3.7%로 가장 낮았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20대 33.0%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30대 36.7, 40대 41.2%, 50대 42.6% ,60대 이상 42.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지역을 살펴보면 군포, 평택의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합계 응답율을 살펴보면 7.6%, 6.4%로 10%미만으로 각각 나타나는데 합계 응답율 10%대를 보이고 있는 광명, 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의왕, 이천, 하남 12개 지역과 함께 지역민의 의식변화를 꾀하여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부장적인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18.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4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85(2.6) | 431(13.1) | 719(21.9) | 1,273(38.8) | 776(23.6) | 309.686(4) *** |
| | 남성 | 170(9.1) | 405(21.7) | 548(29.4) | 523(28.0) | 219(11.7) | |
| | 전체 | 255(5.0) | 836(16.2) | 1,267(24.6) | 1,796(34.9) | 995(19.3) | |
| 연 령 | 20대 | 115(8.4) | 251(18.4) | 433(31.8) | 339(24.9) | 225(16.5) | 217.919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30대 | 39(3.9) | 147(14.8) | 274(27.5) | 339(34.1) | 196(19.7) | (16) *** |
| | 40대 | 34(2.7) | 182(14.2) | 273(21.3) | 494(38.6) | 297(23.2) | |
| | 50대 | 33(3.1) | 183(17.1) | 195(18.3) | 445(41.7) | 212(19.9) | |
| | 60대 이상 | 34(7.7) | 76(17.3) | 86(19.6) | 181(41.2) | 62(41.1) | |
| | 전체 | 255(5.0) | 839(16.3) | 1,261(24.5) | 1,798(34.9) | 992(19.3) | |
| 지역 | 과천 | 6(3.8) | 23(14.7) | 77(49.4) | 41(26.3) | 9(5.8) | |
| | 광명 | 8(5.0) | 15(9.4) | 28(17.5) | 69(43.1) | 40(25.0) | |
| | 광주 | 7(2.1) | 50(14.7) | 76(22.4) | 126(37.1) | 81(23.8) | |
| | 군포 | 3(1.3) | 27(12.1) | 46(20.6) | 88(39.5) | 59(26.5) | |
| | 김포 | 7(4.5) | 29(18.6) | 79(50.6) | 34(21.8) | 7(4.5) | |
| | 부천 | 21(4.5) | 102(21.7) | 93(19.8) | 172(36.6) | 82(17.4) | |
| | 성남 | 15(3.6) | 66(16.0) | 81(19.6) | 136(32.9) | 115(27.8) | |
| | 수원 | 7(2.8) | 46(18.5) | 64(25.8) | 85(34.3) | 46(18.5) | |
| | 시흥 | 7(4.0) | 15(8.6) | 62(35.6) | 54(31.0) | 36(20.7) | |
| | 안산 | 12(3.4) | 62(17.6) | 60(17.0) | 154(43.8) | 64(18.2) | |
| | 안성 | 29(7.4) | 71(18.2) | 108(27.7) | 124(31.8) | 58(14.9) | |
| | 안양 | 20(7.9) | 31(12.3) | 77(30.6) | 65(25.8) | 59(23.4) | |
| | 양평 | 7(4.8) | 32(21.9) | 45(30.8) | 41(28.1) | 21(14.4) | |
| | 여주 | 0(0.0) | 7(4.5) | 40(25.6) | 85(54.5) | 24(15.4) | |
| | 오산 | 8(4.9) | 32(19.5) | 42(25.6) | 59(36.0) | 23(14.0) | |
| | 용인 | 40(17.9) | 42(18.8) | 51(22.8) | 52(23.2) | 39(17.4) | |
| | 의왕 | 15(5.8) | 53(20.5) | 63(24.3) | 95(36.7) | 33(12.7) | |
| | 이천 | 4(2.7) | 20(13.3) | 26(17.3) | 65(43.3) | 35(23.3) | |
| | 평택 | 5(2.7) | 26(13.9) | 38(20.3) | 79(42.2) | 39(20.9) | |
| | 하남 | 15(4.4) | 57(16.7) | 73(21.4) | 132(38.7) | 64(18.8) | |
| 화성 | 16(8.0) | 29(14.6) | 40(20.1) | 56(28.1) | 58(29.1) | | |
| 전체 | 252(4.9) | 835(16.2) | 1,269(24.6) | 1,812(35.1) | 992(19.2) | | |

*p<.05 **p<.01 ***p<.001

〈표 18〉에서 14번 문항인 ‘성폭력이 없어지려면 남녀 간 평등이 이루어져야한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성 13.1%, 남성 21.7%로 문항 14번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남성이 높았고, ‘매우 그렇다’ 여성 23.6%, 남성 11.7%로 문항 14번에 동의해 ‘성폭력이 없어지려면 남녀 간 평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문항에서는 여성이 약 11.9% 더 높았다. 그러므로 남녀간 평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문항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60대 이상 41.1%로 가장 높았고, 20대 16.5%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보통이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층의 응답자들은 ‘그렇다’의 비율이

높으며, 여기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혼 후 가족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이 문항 14번 '성폭력이 없어지려면 남녀 간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에 20대 응답자들 보다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5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33(1.0) | 72(2.2) | 257(7.8) | 838(25.4) | 2,096(63.6) | 189.331(4) *** |
| | 남성 | 37(2.0) | 94(5.0) | 258(13.8) | 644(34.4) | 838(44.8) | |
| | 전체 | 70(1.4) | 166(3.2) | 515(10.0) | 1,482(28.7) | 2,934(56.8) | |
| 연 령 | 20대 | 12(0.9) | 35(2.6) | 166(12.2) | 344(25.2) | 807(59.2) | 108.572(16) *** |
| | 30대 | 13(1.3) | 36(3.6) | 98(9.8) | 261(26.1) | 591(59.2) | |
| | 40대 | 14(1.1) | 32(2.5) | 103(8.0) | 344(26.9) | 788(61.5) | |
| | 50대 | 15(1.4) | 38(3.5) | 102(9.5) | 369(34.4) | 550(51.2) | |
| | 60대 이상 | 15(3.4) | 25(5.6) | 47(10.6) | 172(38.7) | 186(41.8) | |
| | 전체 | 69(1.3) | 166(3.2) | 516(10.0) | 1,490(28.9) | 2,922(56.6) | |
| 지 역 | 과천 | 6(3.8) | 15(9.6) | 66(42.0) | 45(28.7) | 25(15.9) | |
| | 광명 | 0(0.0) | 1(0.6) | 6(3.8) | 58(36.3) | 95(59.4) | |
| | 광주 | 2(0.6) | 5(1.5) | 15(4.4) | 93(27.0) | 229(66.6) | |
| | 군포 | 2(0.9) | 6(2.7) | 15(6.7) | 49(21.9) | 152(67.9) | |
| | 김포 | 5(3.2) | 19(12.2) | 66(42.3) | 49(31.4) | 152(67.9) | |
| | 부천 | 6(1.3) | 17(3.6) | 47(10.0) | 134(28.5) | 266(56.6) | |
| | 성남 | 9(2.2) | 17(4.1) | 22(5.3) | 113(27.3) | 253(61.1) | |
| | 수원 | 1(0.4) | 4(1.6) | 15(6.0) | 69(27.6) | 161(64.4) | |
| | 시흥 | 4(2.3) | 11(6.3) | 57(32.8) | 59(33.9) | 43(24.7) | |
| | 안산 | 4(1.1) | 5(1.4) | 13(3.7) | 104(29.4) | 228(64.4) | |
| | 안성 | 6(1.5) | 20(5.1) | 52(13.3) | 102(26.2) | 210(53.8) | |
| | 안양 | 1(0.4) | 7(2.8) | 25(9.9) | 51(20.2) | 168(66.7) | |
| | 양평 | 3(2.0) | 2(1.3) | 7(4.7) | 44(29.5) | 93(62.4) | |
| | 여주 | 0(0.0) | 1(0.6) | 17(10.9) | 90(57.7) | 48(30.8) | |
| | 오산 | 3(1.8) | 9(5.5) | 28(17.1) | 62(37.8) | 62(37.8) | |
| | 용인 | 4(1.8) | 5(2.2) | 26(11.6) | 53(23.6) | 137(60.9) | |
| | 의왕 | 2(0.8) | 5(1.9) | 7(2.7) | 81(31.3) | 164(63.3) | |
| | 이천 | 4(2.6) | 3(2.0) | 8(5.3) | 50(32.9) | 87(57.2) | |
| | 평택 | 2(1.1) | 3(1.6) | 1(0.5) | 33(17.6) | 148(79.1) | |
| | 하남 | 4(1.2) | 7(2.0) | 10(2.9) | 103(30.0) | 219(63.8) | |
| 화성 | 2(1.0) | 3(1.5) | 14(7.0) | 60(30.2) | 120(60.3) | | |
| 전체 | 70(1.4) | 165(3.2) | 517(10.0) | 1,502(29.0) | 2,925(56.5) | | |

*p<.05 **p<.01 ***p<.001

〈표 19〉에서 15번 문항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매우 그렇다’ 여성 63.6%, 남성 44.8%이고, ‘그렇다’ 여성 25.4%, 남성 34.4%로 여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문항 15번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40대 61.5%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41.8%로 가장 낮았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60대 이상 38.7%로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60대 이상 응답자들을 제외한 연령층이 60대 이상 응답자들 보다 문항 15번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6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있다.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없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2,310(70.6) | 964(29.4) | 0.068 (1) .794 |
| | 남성 | 1,308(70.2) | 555(29.8) | |
| | 전체 | 3,618(70.4) | 1,519(29.6) | |
| 연 령 | 20대 | 1,227(90.0) | 137(10.0) | 634.842 (4) *** |
| | 30대 | 753(75.5) | 245(24.5) | |
| | 40대 | 884(69.2) | 393(30.8) | |
| | 50대 | 595(56.4) | 460(43.6) | |
| | 60대 이상 | 151(34.4) | 288(65.6) | |
| | 전체 | 3,610(70.3) | 1,523(29.7) | |
| 지 역 | 과천 | 110(70.1) | 47(29.9) | |
| | 광명 | 108(67.5) | 52(32.5) | |
| | 광주 | 234(67.4) | 113(32.6) | |
| | 군포 | 144(64.6) | 79(35.4) | |
| | 김포 | 129(82.7) | 27(17.3) | |
| | 부천 | 324(69.7) | 141(30.3) | |
| | 성남 | 272(66.8) | 135(33.2) | |
| | 수원 | 174(69.9) | 75(30.1) | |
| | 시흥 | 143(81.7) | 32(18.3) | |
| | 안산 | 188(55.3) | 152(44.7) | |
| | 안성 | 259(66.4) | 131(33.6) | |
| | 안양 | 214(84.9) | 38(15.1) | |
| | 양평 | 111(74.5) | 38(25.5) | |
| | 여주 | 110(70.5) | 46(29.5) | |
| | 오산 | 105(64.4) | 58(35.6) | |
| 용인 | 187(83.5) | 37(16.5) | | |

| 구 분 |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있다.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없다. | χ^2 (df) p-value |
|-----|----|-----------------|-----------------|--------------------------|
| | 의왕 | 178(68.7) | 81(31.3) | |
| | 이천 | 100(66.2) | 51(33.8) | |
| | 평택 | 117(62.6) | 70(37.4) | |
| | 하남 | 264(77.6) | 76(22.4) | |
| | 화성 | 150(75.4) | 49(24.6) | |
| | 전체 | 3,621(70.3) | 1,528(29.7) | |

*p<.05 **p<.01 ***p<.001

〈표 20〉에서 16번 문항인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성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있다’ 여성 70.6%, 남성 70.2%이고,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없다’ 여성 29.4%, 남성 29.8%로 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 남녀 간의 비율 차이가 의미가 없으므로 빈도 수치만 파악해보기로 한다.

연령 구분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있다’ 34.4%,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없다’ 65.6%로 다른 연령층과는 비율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있다’ 90.0% 로 20대와 60대는 약55.6%의 차이가 난다. 이는 학교 재학 중 성폭력예방교육의 접근성이 높은 20대와 자녀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30대~50대의 학부모 혹은 직장인들이 성폭력예방교육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6번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1.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문항 16-1번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에 답변 가능하다.

〈표 21〉은 문항 16의 빈도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자료이다.

〈표 21.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6-1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학교 | 회사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
| 성별 | 여성 | 857(38.9) | 458(20.8) | 528(23.9) | 254(11.5) | 108(4.9) |
| | 남성 | 502(40.3) | 327(26.3) | 329(26.4) | 50(4.0) | 37(3.0) |
| | 전체 | 1,359(39.4) | 785(22.8) | 857(24.8) | 304(8.8) | 145(4.2) |
| 연령 | 20대 | 921(78.6) | 100(8.5) | 113(9.6) | 15(1.3) | 23(2.0) |
| | 30대 | 184(25.6) | 265(36.8) | 209(29.0) | 47(6.5) | 15(2.1) |
| | 40대 | 167(20.0) | 239(28.7) | 275(33.0) | 119(14.3) | 33(4.0) |
| | 50대 | 58(10.1) | 140(24.3) | 220(38.3) | 103(17.9) | 54(9.4) |
| | 60대 이상 | 18(12.5) | 38(26.4) | 43(29.9) | 25(17.4) | 20(13.9) |

| 구 분 | | 학교 | 회사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
| | 전체 | 1,348(39.1) | 782(22.7) | 860(25.0) | 309(9.0) | 145(4.2) |
| 지역 | 과천 | 52(47.7) | 4(3.7) | 46(42.2) | 7(6.4) | 0(0.0) |
| | 광명 | 60(56.1) | 9(8.4) | 29(27.1) | 9(8.4) | 0(0.0) |
| | 광주 | 90(42.5) | 43(20.3) | 39(18.4) | 28(13.2) | 12(5.7) |
| | 군포 | 41(31.3) | 15(11.5) | 42(32.1) | 27(20.6) | 6(4.6) |
| | 김포 | 61(47.7) | 8(6.3) | 51(39.8) | 7(5.5) | 1(0.8) |
| | 부천 | 98(32.0) | 106(34.6) | 53(17.3) | 28(9.2) | 21(6.9) |
| | 성남 | 71(27.3) | 81(31.2) | 60(23.1) | 31(11.9) | 17(6.5) |
| | 수원 | 71(43.0) | 44(26.7) | 29(17.6) | 12(7.3) | 9(5.5) |
| | 시흥 | 32(22.4) | 43(30.1) | 56(39.2) | 12(8.4) | 0(0.0) |
| | 안산 | 49(28.5) | 51(29.7) | 35(20.3) | 26(15.1) | 11(6.4) |
| | 안성 | 94(37.2) | 62(24.5) | 80(31.6) | 12(4.7) | 5(2.0) |
| | 안양 | 130(65.0) | 25(12.5) | 22(11.0) | 12(6.0) | 11(5.5) |
| | 양평 | 17(16.5) | 46(44.7) | 24(23.3) | 12(11.7) | 4(3.9) |
| | 여주 | 58(52.7) | 23(20.9) | 22(20.0) | 7(6.4) | 0(0.0) |
| | 오산 | 49(47.1) | 13(12.5) | 33(31.7) | 9(8.7) | 0(0.0) |
| | 용인 | 110(61.8) | 22(12.4) | 24(13.5) | 10(5.6) | 12(6.7) |
| | 의왕 | 72(40.4) | 32(18.0) | 54(30.3) | 8(4.5) | 12(6.7) |
| | 이천 | 17(18.3) | 21(22.6) | 35(37.6) | 15(16.1) | 5(5.4) |
| | 평택 | 45(40.5) | 30(27.0) | 22(19.8) | 8(7.2) | 6(5.4) |
| | 하남 | 74(30.6) | 65(26.9) | 67(27.7) | 21(8.7) | 15(6.2) |
| 화성 | 68(46.3) | 34(23.1) | 40(27.2) | 5(3.4) | 0(0.0) | |
| | 전체 | 1,359(39.4) | 777(22.5) | 863(25.0) | 306(8.9) | 147(4.3) |

위의 <표 21>에서 성별 구분을 먼저 보자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이 학교인 경우 여성 38.9%, 남성 4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공공기관, 회사, 민간기관, 기타의 순이다. 기타에서는 군대와 TV 방송이나 인터넷,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였고, 여성단체와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교회, 유치원, 시민단체, 아이들의 학교, 병원, 지역학습관, 복지관, 소규모사업장 등 다양한 곳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 구분을 보자면, 20대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교육 받은 비율이 78.6%라면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12.5%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60대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29.9%로 첫 번째 빈도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라고 응답하여 공공기관과 회사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 등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의 기회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0대는 회사에서 교육 받은 비율이 36.8%로 가장 높고, 40~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학교, 회사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교육 받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40~60대 또한 민간기관 등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의 기회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22.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7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1,190(36.4) | 1,603(49.0) | 400(12.2) | 59(1.8) | 20(0.6) | 501.658 (4) *** |
| | 남성 | 275(14.7) | 872(46.7) | 557(29.8) | 144(7.7) | 18(1.0) | |
| | 전체 | 1,465(28.5) | 2,475(48.2) | 957(18.6) | 203(4.0) | 38(0.7) | |
| 연 령 | 20대 | 453(33.3) | 527(38.7) | 287(21.1) | 79(5.8) | 15(1.1) | 124.601(16) *** |
| | 30대 | 314(31.5) | 487(48.9) | 164(16.5) | 29(2.9) | 2(0.2) | |
| | 40대 | 345(27.0) | 695(54.5) | 188(14.7) | 41(3.2) | 7(0.5) | |
| | 50대 | 252(23.7) | 556(52.4) | 206(19.4) | 38(3.6) | 10(0.9) | |
| | 60대 이상 | 94(21.4) | 214(48.7) | 112(25.5) | 15(3.4) | 4(0.9) | |
| | 전체 | 1,458(28.4) | 2,479(48.3) | 957(18.6) | 202(3.9) | 38(0.7) | |
| 지 역 | 과천 | 44(28.2) | 86(55.1) | 24(15.4) | 2(1.3) | 0(0.0) | |
| | 광명 | 63(39.4) | 66(41.3) | 28(17.5) | 3(1.9) | 0(0.0) | |
| | 광주 | 98(28.3) | 170(49.1) | 66(19.1) | 8(2.3) | 4(1.2) | |
| | 군포 | 73(32.6) | 115(51.3) | 31(13.8) | 4(1.8) | 1(0.4) | |
| | 김포 | 58(37.2) | 89(57.1) | 8(5.1) | 1(0.6) | 0(0.0) | |
| | 부천 | 140(29.9) | 213(45.4) | 82(17.5) | 30(6.4) | 4(0.9) | |
| | 성남 | 121(29.7) | 193(47.4) | 70(17.2) | 18(4.4) | 5(1.2) | |
| | 수원 | 77(30.8) | 107(42.8) | 51(20.4) | 12(4.8) | 3(1.2) | |
| | 시흥 | 39(22.3) | 100(57.1) | 34(19.4) | 1(0.6) | 1(0.6) | |
| | 안산 | 99(29.2) | 176(51.9) | 56(16.5) | 6(1.8) | 2(0.6) | |
| | 안성 | 108(27.9) | 197(50.9) | 74(19.1) | 6(1.6) | 2(0.5) | |
| | 안양 | 67(26.8) | 96(38.4) | 67(26.8) | 18(7.2) | 2(0.8) | |
| | 양평 | 26(17.6) | 78(52.7) | 32(21.6) | 11(7.4) | 1(0.7) | |
| | 여주 | 52(33.3) | 57(36.5) | 40(25.6) | 7(4.5) | 0(0.0) | |
| | 오산 | 35(21.5) | 87(53.4) | 38(23.3) | 3(1.8) | 0(0.0) | |
| | 용인 | 46(20.5) | 88(39.3) | 54(24.1) | 32(14.3) | 4(1.8) | |
| | 의왕 | 69(26.6) | 115(44.4) | 67(25.9) | 8(3.1) | 0(0.0) | |
| | 이천 | 38(25.2) | 78(51.7) | 28(18.5) | 3(2.0) | 4(2.6) | |
| | 평택 | 64(34.2) | 90(48.1) | 22(11.8) | 11(5.9) | 0(0.0) | |
| | 하남 | 77(22.4) | 177(51.6) | 65(19.0) | 20(5.8) | 4(1.2) | |
| 화성 | 70(35.2) | 107(53.8) | 21(10.6) | 0(0.0) | 1(0.5) | | |
| 전체 | 1,464(28.4) | 2,485(48.3) | 958(18.6) | 204(4.0) | 38(0.7) | | |

*p<.05 **p<.01 ***p<.001

〈표 22〉에서 17번 문항인 ‘귀하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 여성 36.4%, 남성 14.7% 로 높은 비율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은 ‘보통이다’의

응답에서 29.8%로 여성 12.2%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귀하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강력하게 부정하는 응답자가 많다고 알 수 있다.

특히 21개 지역이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 28.4%, ‘그렇지 않다’에 48.3%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지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의 유관기관 등에서 다각도로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다.

연령 구분에서는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 40대 54.5%로 가장 높았고, 20대 38.7%로 가장 낮았다. 또,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는 20대가 33.3%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1.4%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문항 17번 ‘귀하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을 동의하는지 혹은 얼마나 동의하지 않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3.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18번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854(26.1) | 1,501(45.9) | 785(24.0) | 121(3.7) | 10(0.3) | 365.110 (4) *** |
| | 남성 | 187(10.0) | 736(39.5) | 715(38.3) | 191(10.2) | 36(1.9) | |
| | 전체 | 1,041(20.3) | 2,237(43.6) | 1,500(29.2) | 312(6.1) | 46(0.9) | |
| 연 령 | 20대 | 352(25.9) | 407(29.9) | 448(32.9) | 122(9.0) | 31(2.3) | 204.269 (16) *** |
| | 30대 | 214(21.5) | 464(46.6) | 266(26.7) | 48(4.8) | 4(0.4) | |
| | 40대 | 209(16.4) | 655(51.3) | 358(28.0) | 52(4.1) | 4(0.3) | |
| | 50대 | 203(19.2) | 505(47.8) | 286(27.1) | 58(5.5) | 5(0.3) | |
| | 60대 이상 | 62(14.1) | 209(47.5) | 134(30.5) | 32(7.3) | 3(0.7) | |
| | 전체 | 1040(20.3) | 2240(43.7) | 1492(29.1) | 312(6.1) | 47(0.9) | |
| 지 역 | 과천 | 38(24.2) | 76(48.4) | 41(26.1) | 1(0.6) | 1(0.6) | |
| | 광명 | 53(33.1) | 49(30.6) | 51(31.9) | 6(3.8) | 1(0.6) | |
| | 광주 | 73(21.2) | 161(46.7) | 96(27.8) | 14(4.1) | 1(0.3) | |
| | 군포 | 44(19.7) | 93(41.7) | 70(31.4) | 15(6.7) | 1(0.4) | |
| | 김포 | 49(31.6) | 66(42.6) | 40(25.8) | 0(0.0) | 0(0.0) | |
| | 부천 | 84(18.0) | 223(47.9) | 125(26.8) | 31(6.7) | 3(0.6) | |
| | 성남 | 72(17.7) | 183(45.0) | 111(27.3) | 36(8.8) | 5(1.2) | |
| | 수원 | 72(28.9) | 101(40.6) | 57(22.9) | 15(6.0) | 4(1.6) | |
| | 시흥 | 37(21.3) | 100(57.5) | 33(19.0) | 3(1.7) | 1(0.6) | |
| | 안산 | 86(25.2) | 166(48.7) | 80(23.5) | 9(2.6) | 0(0.0) | |
| | 안성 | 79(20.4) | 189(48.7) | 102(26.3) | 16(4.1) | 2(0.5) | |
| | 안양 | 43(17.1) | 82(32.7) | 100(39.8) | 21(14.1) | 1(0.7) | |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df) p-value |
|-----|----|-------------|-------------|-------------|----------|---------|--------------------------|
| | 양평 | 7(4.7) | 63(42.3) | 57(38.3) | 21(14.1) | 1(0.7) | |
| | 여주 | 52(33.3) | 51(32.7) | 45(28.8) | 8(5.1) | 0(0.0) | |
| | 오산 | 29(17.8) | 80(49.1) | 49(30.1) | 5(3.1) | 0(0.0) | |
| | 용인 | 28(12.5) | 69(30.8) | 90(40.2) | 26(11.6) | 11(4.9) | |
| | 의왕 | 27(10.4) | 89(34.4) | 121(43.7) | 20(7.7) | 2(0.8) | |
| | 이천 | 21(13.8) | 67(44.1) | 47(30.9) | 14(9.2) | 3(2.0) | |
| | 평택 | 51(27.4) | 91(48.9) | 34(18.3) | 8(4.3) | 2(1.1) | |
| | 하남 | 38(11.1) | 155(45.3) | 105(30.7) | 41(12.0) | 3(0.9) | |
| | 화성 | 63(31.7) | 94(47.2) | 39(19.6) | 3(1.5) | 0(0.0) | |
| | 전체 | 1,046(20.3) | 2,248(43.7) | 1,493(29.0) | 313(6.1) | 46(0.9) | |

*p<.05 **p<.01 ***p<.001

〈표 23〉에서 18번 문항인 ‘귀하는 우리 지역(시·군)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보통이다’의 응답에서 여성 24.0%, 남성 38.3% 이고, ‘그렇다’ 여성 3.7%, 남성 10.2%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우리 지역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구분에서는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 40대 51.3%로 가장 높았고, 20대 29.9%로 가장 낮았다. 또,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는 20대가 25.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14.1% 가장 낮았다.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은 ‘그렇지 않다’에 많이 분포하여 비율이 높았지만, 20대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두 가지 항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20대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층의 응답자들보다 더 ‘귀하는 우리 지역(시·군)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광명 33.1%, 여주 33.3%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첫번째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에 과천,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평, 오산, 이천, 평택, 하남, 화성 17개 지역민이 답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 불안을 잠재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의 성폭력상담소가 부재한 곳은 상담소의 설치를 고려하고, 상담소가 있는 곳은 더욱더 상담소가 예방관련 활동 즉,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밑의 〈표 24〉는 문항 19번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다중 응답 문항이 아니었지만 응답자들의 중복 체크가 너무 많아 다중 응답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표 24. 성별·연령 구분에 따른 문항 19 다중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상담소의 역할 (성폭력예방) 홍보 강화 | 가해자 처벌 강화 | CCTV설치 확대 | 방법, 순찰 강화 | 기타 |
|-----|--------|-------------|-----------------------|-------------|-------------|-------------|---------|
| 성 별 | 여성 | 1,222(37.3) | 606(8.5) | 1,613(49.3) | 711(21.7) | 747(22.8) | 68(2.1) |
| | 남성 | 551(29.6) | 219(11.8) | 792(42.6) | 411(22.1) | 418(22.5) | 22(1.2) |
| | 전체 | 1,773(34.6) | 825(16.1) | 2,405(46.9) | 1,122(21.9) | 1,165(22.7) | 90(1.8) |
| 연 령 | 20대 | 281(20.6) | 181(13.3) | 678(49.8) | 265(19.5) | 320(23.5) | 19(1.4) |
| | 30대 | 308(31.0) | 165(16.6) | 508(51.1) | 242(24.3) | 266(26.7) | 24(2.4) |
| | 40대 | 566(44.4) | 197(15.4) | 647(50.7) | 282(22.1) | 277(21.7) | 17(1.3) |
| | 50대 | 464(43.9) | 217(20.5) | 422(39.9) | 217(20.5) | 213(20.2) | 17(1.6) |
| | 60대 이상 | 149(34.1) | 71(16.2) | 151(34.6) | 106(24.3) | 86(19.7) | 13(3.0) |
| | 전체 | 1,768(34.5) | 831(16.2) | 2,406(46.9) | 1,112(21.7) | 1,162(22.7) | 90(1.8) |

*p<.05 **p<.01 ***p<.001

〈표 24〉에서 19번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성별·연령 구분에 따라 분석했다. 성별 구분의 경우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강화’라는 응답에 여성 49.3%, 남성 42.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대안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여성 37.3%, 남성 29.6%가 선택했다. CCTV의 설치, 방법 순찰의 강화, 상담소의 역할과 홍보 강화,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소수의견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하여 인권교육, 인성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도 들어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더욱더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교육안에서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근절을 포함하여 여성폭력근절과 관련된 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역에 널리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령 구분의 경우 20-40대, 60대 이상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지만 50대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이 43.9%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이므로 50대 연령층에 요구한대로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표 25.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20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신고하겠다. | 상담소를 찾아 가겠다. | 침묵 하겠다. | 가족, 동료에게 알리겠다. | 기타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2,054(65.3) | 799(25.4) | 63(2.0) | 173(5.5) | 56(1.8) | 101.786 (4) *** |
| | 남성 | 1,411(77.9) | 248(13.7) | 32(1.8) | 89(4.9) | 32(1.8) | |
| | 전체 | 3,465(69.9) | 1,047(21.1) | 95(1.9) | 262(5.3) | 88(1.8) | |
| 연 령 | 20대 | 941(71.1) | 252(19.0) | 22(1.7) | 83(6.3) | 25(1.9) | 36.122 (16) ** |
| | 30대 | 663(70.5) | 196(20.8) | 14(1.5) | 57(6.1) | 11(1.2) | |
| | 40대 | 842(68.0) | 306(24.7) | 24(1.9) | 48(3.9) | 18(1.5) | |
| | 50대 | 721(70.3) | 209(20.4) | 21(2.0) | 52(5.1) | 22(2.1) | |
| | 60대 이상 | 300(70.3) | 81(19.0) | 15(3.5) | 18(4.2) | 13(3.0) | |
| | 전체 | 3,467(70.0) | 1,044(21.1) | 96(1.9) | 258(5.2) | 89(1.8) | |
| 지 역 | 과천 | 111(71.2) | 40(25.6) | 1(0.6) | 3(1.9) | 1(0.6) | |
| | 광명 | 101(63.9) | 50(31.6) | 0(0.0) | 7(4.4) | 0(0.0) | |
| | 광주 | 224(69.8) | 57(17.8) | 6(1.9) | 28(8.7) | 6(1.9) | |
| | 군포 | 131(64.9) | 49(24.3) | 5(2.5) | 15(7.4) | 2(1.0) | |
| | 김포 | 112(72.3) | 42(27.1) | 0(0.0) | 1(0.6) | 0(0.0) | |
| | 부천 | 319(70.1) | 96(21.1) | 11(2.4) | 22(4.8) | 7(1.5) | |
| | 성남 | 283(71.8) | 78(19.7) | 11(2.8) | 15(3.8) | 7(1.8) | |
| | 수원 | 168(70.3) | 45(18.8) | 5(2.1) | 17(7.1) | 4(1.7) | |
| | 시흥 | 131(74.9) | 40(22.9) | 0(0.0) | 4(2.3) | 0(0.0) | |
| | 안산 | 201(62.8) | 81(25.3) | 8(2.5) | 20(6.3) | 10(3.1) | |
| | 안성 | 273(72.6) | 72(19.1) | 4(1.1) | 23(6.1) | 4(1.1) | |
| | 안양 | 170(73.0) | 40(17.2) | 3(1.3) | 16(6.9) | 4(1.7) | |
| | 양평 | 100(72.5) | 29(21.0) | 3(2.2) | 3(2.2) | 3(2.2) | |
| | 여주 | 123(78.8) | 19(12.2) | 2(1.3) | 12(7.7) | 0(0.0) | |
| | 오산 | 102(63.8) | 40(25.0) | 2(1.3) | 12(7.5) | 4(2.5) | |
| | 용인 | 161(76.3) | 23(10.9) | 9(4.3) | 9(4.3) | 9(4.3) | |
| | 의왕 | 201(77.6) | 32(12.4) | 8(3.1) | 13(5.0) | 5(1.9) | |
| | 이천 | 101(68.2) | 29(19.6) | 4(2.7) | 6(4.1) | 8(5.4) | |
| | 평택 | 127(74.7) | 28(16.5) | 2(1.2) | 9(5.3) | 4(2.4) | |
| | 하남 | 214(62.4) | 97(28.3) | 6(1.7) | 18(5.2) | 8(2.3) | |
| | 화성 | 120(60.6) | 65(32.8) | 3(1.5) | 8(4.0) | 2(1.0) | |
| 전체 | 3,473(69.9) | 1,052(21.2) | 93(1.9) | 261(5.3) | 88(1.8) | | |

*p<.05 **p<.01 ***p<.001

〈표 25〉에서 20번 문항인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는 ‘신고하겠다’의 응답에서 여성 65.3%, 남성 77.9%이고, ‘상담소를 찾아 가겠다’의 응답에서 여성 25.4%, 남성 13.7%로 ‘신고한다’는 응답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상담소를 찾아 가겠다’라는 응답에서는 여성의 비율 높았다. 이는 여성들이 대부분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성폭력상담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상담소 이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지역은 상담소의 설치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을 간다거나 찾아가서 양값음을 한다거나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 혹은 침묵하겠다, 잘 모르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연령 구분에서는 ‘신고하겠다’의 비율이 전 연령별로 높다. 하지만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보다 ‘신고하겠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담소를 찾아 가겠다’의 비율이 24.7%로 가장 높았다. 4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성별·연령·지역적 구분에 따른 문항 21 응답 결과〉

(단위 : 명, %)

| 구 분 | | 경찰서(112) | 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1366) | 가족, 동료, 이웃 | 기타 | χ^2 (df) p-value |
|-----|--------|-------------|-------------|--------------|------------|---------|--------------------------|
| 성 별 | 여성 | 967(31.7) | 1,024(33.6) | 868(28.5) | 155(5.1) | 34(1.1) | 650.398 (4) *** |
| | 남성 | 1,173(66.2) | 388(21.9) | 96(5.4) | 93(5.2) | 22(1.2) | |
| | 전체 | 2,140(44.4) | 1,412(29.3) | 964(20.0) | 248(5.1) | 56(1.2) | |
| 연 령 | 20대 | 679(52.6) | 360(27.9) | 156(12.1) | 85(6.6) | 12(0.9) | 149.771 (16) *** |
| | 30대 | 385(42.0) | 270(29.4) | 209(22.8) | 47(5.1) | 6(0.7) | |
| | 40대 | 435(36.5) | 387(32.4) | 318(26.7) | 40(3.4) | 13(1.1) | |
| | 50대 | 437(43.8) | 278(27.9) | 222(22.2) | 47(4.7) | 14(1.4) | |
| | 60대 이상 | 207(49.5) | 112(26.8) | 65(15.6) | 22(5.3) | 12(2.9) | |
| | 전체 | 2,143(44.5) | 1,407(29.2) | 970(20.1) | 241(5.0) | 57(1.2) | |
| 지 역 | 과천 | 49(31.4) | 63(40.4) | 30(19.2) | 12(7.7) | 2(1.3) | |
| | 광명 | 71(45.5) | 57(36.5) | 21(13.5) | 7(4.5) | 0(0.0) | |
| | 광주 | 137(44.6) | 75(24.4) | 71(23.1) | 21(6.8) | 3(1.0) | |
| | 군포 | 57(29.8) | 62(32.5) | 59(30.9) | 10(5.2) | 3(1.6) | |
| | 김포 | 74(47.4) | 61(39.1) | 20(12.8) | 1(0.6) | 0(0.0) | |
| | 부천 | 190(44.2) | 120(27.9) | 103(24.0) | 14(3.3) | 3(0.7) | |
| | 성남 | 153(39.9) | 119(31.1) | 85(22.2) | 18(4.7) | 8(2.1) | |
| | 수원 | 115(48.5) | 58(24.5) | 50(21.1) | 11(4.6) | 3(1.3) | |
| | 시흥 | 84(48.8) | 52(30.2) | 34(19.8) | 2(1.2) | 0(0.0) | |
| | 안산 | 102(33.9) | 82(27.2) | 86(28.6) | 26(8.6) | 5(1.7) | |

| 구 분 | | 경찰서(112) | 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1366) | 가족, 동료, 이웃 | 기타 | χ^2 (df) p-value |
|-----|----|-------------|-------------|--------------|------------|---------|--------------------------|
| | 안성 | 190(51.2) | 82(22.1) | 65(17.5) | 31(8.4) | 3(0.8) | |
| | 안양 | 106(48.6) | 54(24.8) | 43(19.7) | 15(6.9) | 0(0.0) | |
| | 양평 | 56(42.1) | 41(30.8) | 31(23.3) | 2(1.5) | 3(2.3) | |
| | 여주 | 100(64.1) | 21(13.5) | 19(12.2) | 16(10.3) | 0(0.0) | |
| | 오산 | 65(40.6) | 57(35.6) | 25(15.6) | 13(8.1) | 0(0.0) | |
| | 용인 | 121(59.3) | 53(26.0) | 16(7.8) | 8(3.9) | 6(2.9) | |
| | 의왕 | 144(56.0) | 53(20.6) | 49(19.1) | 9(3.5) | 2(0.8) | |
| | 이천 | 52(35.9) | 44(30.3) | 35(24.1) | 9(6.2) | 5(3.4) | |
| | 평택 | 66(42.0) | 47(29.9) | 34(21.7) | 8(5.1) | 2(1.3) | |
| | 하남 | 146(42.6) | 121(35.3) | 62(18.1) | 7(2.0) | 7(2.0) | |
| | 화성 | 77(39.3) | 89(45.4) | 18(9.2) | 11(5.6) | 1(0.5) | |
| | 전체 | 2,155(44.6) | 1,411(29.2) | 956(19.8) | 251(5.2) | 56(1.2) | |

〈표 26〉에서 21번 문항인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별 구분에서는 ‘경찰서(112)’의 응답에서 여성 31.7%, 남성 66.2% 로 높은 비율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에 주로 분포했다면, 여성은 경찰서(112),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세 응답에 고루 분포한다. 이는 남성의 경우, 여타 범죄와 다름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제삼자에게 노출을 꺼리게 되고,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받게 되는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광역화되어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 남부권의 경우 안양에 소재함)을 통하여 지역의 15개소 성폭력상담소로 연계되거나, 직접 지역에 자리한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면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령 구분에서는 ‘경찰서(112)’의 비율이 전 연령별로 높지만 20대의 경우 52.6%로 압도적이게 높은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하에 법적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던 20대와는 다르게 30~50대 응답자들은 경찰서(112),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의 비율이 20대 보다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하여 성폭력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30~50대 연령대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경기도민의 성의식, 성폭력예방에 대한 소결

(1) 성폭력·성의식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여전하다. 그러므로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기 남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5,261부의 설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7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문항1~5에서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문항 5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에서 ‘그렇다’ 32.5% ‘매우 그렇다’ 19.4% 총51.9%로 나타나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은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문항 1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에서 ‘그렇다’ 51.5%, ‘매우 그렇다’ 26.5%를 제외한 22.1%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 응답자의 32%는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역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일상 속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무의식적인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성인식과 관련한 문항 6~15를 살펴보면, 문항 8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병자이다’에서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총51.5%가 답하고 있고 이는 대다수 성폭력가해자들은 낯선 사람이나 사회 부적응자보다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의 친구, 이웃,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인식 수정이 필요하다.

문항 10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그렇다’ 40.2%, ‘매우 그렇다’ 21.3%로 두 가지 답변에 총61.5%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발생 장소에서 모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모텔이라는 장소가 성관계에 동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모텔 투숙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을 때조차도 가해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성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다루어진 4개 문항을 비롯하여 잘못된 성관련 통념들은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령별, 지역간 응답율의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21개 시·군의 응답율은 연령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문항에 따라 답변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각 문항에서 20대의 응답율과 60대의 응답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60대 연령층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역간 편차도 문항에 따라 다르지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성폭력상담소의 소재 유무에 따른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심스레 유추해 볼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곳은 성폭력예방교육의 접근성이 높고, 결국 활동 반경이 근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김포, 시흥, 양평, 여주, 오산, 이천, 화성의 7개 지역에 성폭력상담소의 설치(혹은 지역에 소재한 가정폭력상담소를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로 전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성폭력상담소가 있지만 응답율이 낮게 나온 지역은 성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3)성폭력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문항 18 ‘귀하는 우리 지역(시·군)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여성이 ‘전혀 그렇지 않다’ 26.1%, ‘그렇지 않다’ 45.9% 총72.0%로 나타나 남성의 ‘전혀 그렇지 않다’ 10.0%, ‘그렇지 않다’ 39.5% 총 49.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령에서도 20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 25.9%, ‘그렇지 않다’ 29.9% 총 55.8%로 나타나 여성과 특히 20대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불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지역적으로 광명 33.1%, 여주 33.3%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첫번째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에 과천,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평, 오산, 이천, 평택, 하남, 화성 17개 지역민이 ‘그렇지 않다’에 첫번째 높은 빈도수를 보이면서 경기도민 대부분의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불안을 잠재울 광범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Ⅲ. 경기도민 성인식, 성폭력예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제언

1. 성폭력예방교육 내용 검토의 필요성

성폭력의 고정관념은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의 가해 동기를 본능적이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남성의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성폭력 발생 사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비난하는 논리이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평가하거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순결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 및 의식이다.

여기에서는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 등 성폭력과 관련된 문항 5개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경기 남부권역민의 경우,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폭력 고정관념의 변화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내용의 차별화는 물론 연령에 맞는 생애 주기별 교육, 교육 매뉴얼의 개발을 통하여 바른 성폭력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검토와 아울러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강사 모니터링 등이 확대 되어야 한다.

2. 다양한 곳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의 경험 있다’가 전체적으로 70.3%로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20대의 90.0%를 참고하여 많은 지역민들이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맞는 맞춤형교육의 구조화를 위하여 활발한 정보 공유와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3년차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그 좋은 예로 이에 대한 예산의 확대,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결과에서 보듯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이 학교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공공기관, 회사, 민간기관, 기타의 순이다. 현재 현재 학교에서의 의무교육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하여 유아 때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상과 연령에 맞는 교육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기타에서는 군대와 TV 방송이나 인터넷,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였고, 여성단체와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교회, 유치원, 시민단체, 아이들의 학교, 병원, 지역학습관, 복지관, 소규모사업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 및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고민하여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언제 어디서라도 지역민이 원한다면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겠다.

3.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항 1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특히 21개 지역이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 28.4%, ‘그렇지 않다’에 48.3%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의 유관기관 등에서 다각도로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겠다.

CCTV의 설치, 방법 순찰의 강화, 상담소의 역할과 홍보 강화뿐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식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내고, 이와 함께 의식교육을 통하여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심리적인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인권교육, 인성교육,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포함하여 성폭력 발생의 원인(遠因)인 가정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모든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성폭력관련 범죄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다.

4. 지역에 성폭력상담소의 설치와 안정적인 지원을 고민하여야 한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있어서 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며 사후 유관기관의 정확한 개입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하여서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민의 1차적 접근처이자 지원기관인 성폭력상담소의 적절한 시설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경기도민의 인구 분포의 특성과 산업 특성, 도농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상담소의 지역적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 남부지역은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지역이 김포, 시흥, 양평, 여주, 오산, 이천, 화성 7개 지역이 있는데, 설문 결과에서 보듯 성폭력 및 성의식에서 성폭력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며 혼란스러운 답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과천,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성, 여주, 오산, 이천, 화성지역은 성폭력 상담소가 없거나(과천, 김포, 시흥, 오산, 화성의 5개 지역), 미지원상담소이거나 시비만 지원이 되어 안정적인 상담소 활동이 어렵거나(광명, 안성의 2개 지역),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서 성폭력예방관련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양평, 여주, 이천)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혹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로 전환하여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5.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

현재 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는 200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일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임금체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인력이 꾸준히 오랫동안 이직을 하지 않고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인건비의 현실화와 경기도 차원의 임금 가이드 라인의 제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의 재정은 2010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서, 2011년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원이 변경, 지원되고 있음)과 종사자의 경력에 맞게 호봉을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각종 수당의 제공, 종사자의 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행정전문인력의 배치 등을 검토해야만 한다. 성폭력상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활발한 성폭력예방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여야 하겠다.

6.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

남성에게는 공격성, 경쟁성, 합리성 등을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수동성, 의존성, 양육성을 강조하는 성역할의 이중적 사회화는 여성들의 성폭력의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을 때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쉽게 복종하거나 체념하는 유순한 잠재적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인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성폭력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될 것임이 분명하다.

성적으로 보다 평등한 문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매매나 강제가 아니라 동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남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문화, 남녀의 성규범이 이중적이지 않은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도록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을 허용하는 사회구조와 문화,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IV. 토론 자료

[주제 토론]

| | | |
|------|---------------|----|
| 토론 1 | 박옥분 도의원 | 52 |
| 토론 2 | 안효미 과 장 | |
| 토론 3 | 구순란 장학사 | 56 |
| 토론 4 | 김종국 경 감 | |
| 토론 5 | 장수진 변호사 | 61 |

토론 자료1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정책 및 교육 필요

박 옥 분 경기도의원(경기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 들어가며

4대약 근절을 통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일상에서의 폭력은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폭력 피해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폭력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민감성 부족, 성인지 관점 및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면화 미흡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수 십년 간 여성운동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폭력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 사회에 알렸고, 그 결과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은 뿌리 깊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차 피해자의 긴급하고 절박한 신호를 무시해 처참한 결과고 이르게 한 사례들은 여전히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 경기도 및 단체에서 할 일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지역 특성화, 교육 대상별 찾아가는 예방교육 효과성 조사·연구
 - 예방교육 분야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예방교육 활용자료 DB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예방교육 우수콘텐츠 추천제도 운영
- <올해의 강의> 경연대회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발굴·확산

2) 전국 단위 효율적 폭력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전국 17개 시·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의 아동·여성 안전 프로그램 연계
- 폭력예방교육 현장·학계·유관기관 자문단 운영 및 국내·외 교류협력

3) 성인지적 통합교육의 필요성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은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각각 따로 실시하지 않고 성인지적 관점인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이 지식전달위주의 성교육에 그치고 있고, 문제유형 별로 따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실효성도 미흡하여 새로운 형식 및 내용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모두 통합하여 실시하고,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청소년 교육과정 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4) 여성안전마을 시범사업

경기도가 따복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힘으로 위험지역 모니터링부터 환경개선, 순찰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도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안전마을' 사업' 예로 여성 안전마을은 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가정폭력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 1곳은 싱글여성 밀집지역, 1곳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안산) 범죄 취약지역 보안장치를 지원하고, 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5) '찾아가는 정책워크숍'과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둔 '여성안심경기도'정책을 추진,

'여성안심경기도' 정책은 1단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활동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가진 사회를 조성하고, 2단계 환경·사람안전망 구축을 통해 도시 전체가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 피해 여성의 즉각적인 신고에서부터 보호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 6)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대책’ 보다는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정책 시도필요. 사람을 통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같은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지원, 24시간 편의점을‘여성안심지킴이 집’ 으로 운영되어 여성의 위기 상황 시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

- 7) 마을속 비폭력 배움터 실시
 - 길거리에서 십대 청소년과 소통하고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지역 여성들을 발굴하고 성장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 길거리 행사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를 실시함에 있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및 방법 개발을 하여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폭력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바꾸는데 기여.
 - 지역 내 공원 등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 청소년 생활에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평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평화,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역량을 강화.

- 8) 빈곤여성가족 생애주기별 폭력예방사업"
 - 빈곤 지역 내 여성,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폭력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 9) 스마트 폰의 휴대의 용이성,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어플리케이션), 무선 인터넷 연결 등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성폭력 위기 대처 능력 강화.
 - 성폭력 대처, 예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과 성폭력피해 생존자가 손쉽게 정보를 찾아 상황에 적용.
 -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시민들의 성공적인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감수성획득

- 10) 민간사업장, 민간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
 - 성폭력 예방교육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함. 15년 2월 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예방 및 성폭력예방에 대한 노력조항이 신설됨

11) 폭력예방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하여 젠더시민교육으로 정착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제도화 된 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절차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젠더시민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12)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및 수요조사 등 환류시스템 구축

폭력예방교육의 제도화에 따른 체계적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조사 등 신뢰할만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

13)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평가기준 반영

경기도의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에 일반국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적 및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를 포함하고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 폭력예방교육 등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시행한 민간사업장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포상하는 방안을 개별법에 포함

※ 성인권 우수기업(가칭), 폭력제로 우수기업(가칭)

3. 끝으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들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사업은 똑같이 하면서 지원체계가 다름에 따라 통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하고 감정노동자이니 힐링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종사자들의 매년 전체워크숍을 통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물론 지역사회 안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법,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여성정책은 사후대책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경기도의 여성정책은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남경필 지사는 물론 모든 부서 및 기관들이 함께 해 주길 바랄 뿐이다.

토론 자료2

‘성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연대

구 순 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1.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

최근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또 한번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토론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대충 넘어가던 경험에서 오늘날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제화 될 만큼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폭력’문제에 대해 사회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가족으로서 경기교육이 ‘성폭력’에 안전한 환경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토론 발제원고는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방대한 자료 조사 과정을 거쳐 정리되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질문(성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 | 여성 | 33(1.0) | 154(4.7) | 345(10.5) | 1,791(54.4) | 970(29.5) |
| | 남성 | 59(3.2) | 201(10.8) | 336(18.0) | 868(46.6) | 400(21.5) |
| 2.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 | 여성 | 29(0.9) | 87(2.6) | 234(7.1) | 1,777(54.0) | 1,164(35.4) |
| | 남성 | 53(2.8) | 155(8.3) | 288(15.4) | 894(47.9) | 478(25.6) |
| 3.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 | 여성 | 10(0.3) | 39(1.2) | 119(3.6) | 1,363(41.4) | 1,762(53.5) |
| | 남성 | 13(0.7) | 75(4.0) | 194(10.4) | 844(45.1) | 744(39.8) |
| 4.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 | 여성 | 772(23.6) | 1,573(48.1) | 457(14.0) | 350(10.7) | 118(3.6) |
| | 남성 | 298(16.1) | 850(46.0) | 372(20.1) | 239(12.9) | 89(4.8) |
| 5.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여성 | 37(1.1) | 69(2.1) | 256(7.8) | 1,334(40.6) | 1,587(48.3) |
| | 남성 | 29(1.6) | 80(4.3) | 272(14.6) | 798(42.9) | 680(36.6) |

위의 자료를 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인식을 같이 하는 내용도 있지만 남녀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교육이 취해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본 토론 자료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은 교육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2. 사회 현상 분석

YTN '15.8.31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중·고등 학교에서 학생간 성폭력이 3년새 2배 증가, 피해자만 3,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서 성폭력은 피해·가해자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른 전 사회적 대응 요구하고 있다.

폭력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우울, 불안, 보복성 폭력 등의 후유증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등의 폐해가 따르고, 가해학생들은 향후 사회적 범죄로 귀결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안전한 사회 구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피해학생의 10명 중 4명은 자살생각(청소년폭력예방재단, '13)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학생의 '죽고싶었다'는 응답 : 14.3%(14.1차) → 11.9%(14.2차)
- 강력범죄자의 66.7%가 가정환경 문제, 67.2%가 원만치 못한 학창시절 경험(수원지검 강력범죄자 '양형조사 보고서' 분석, '12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신 유해업종이 다수 등장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생 유해환경 노출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취약한 가족의 증가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생의 폭력을 유발하는 유해 환경 증가 및 가정요인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13년 기준 학생 스마트폰 보유율 69% (초 49%, 중 85%, 고 84%)
-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 전망 : 15.6%(05) → 22.3%(17)
- 맞벌이 가구 비율 : 40.1%(05) → 43.6%(11)
- 여성가구주 : 25.7%(10) → 35.1%(35)
- 다문화 가정 학생수 : 39천명(11) → 47천명(12) → 56천명(13) → 68천명(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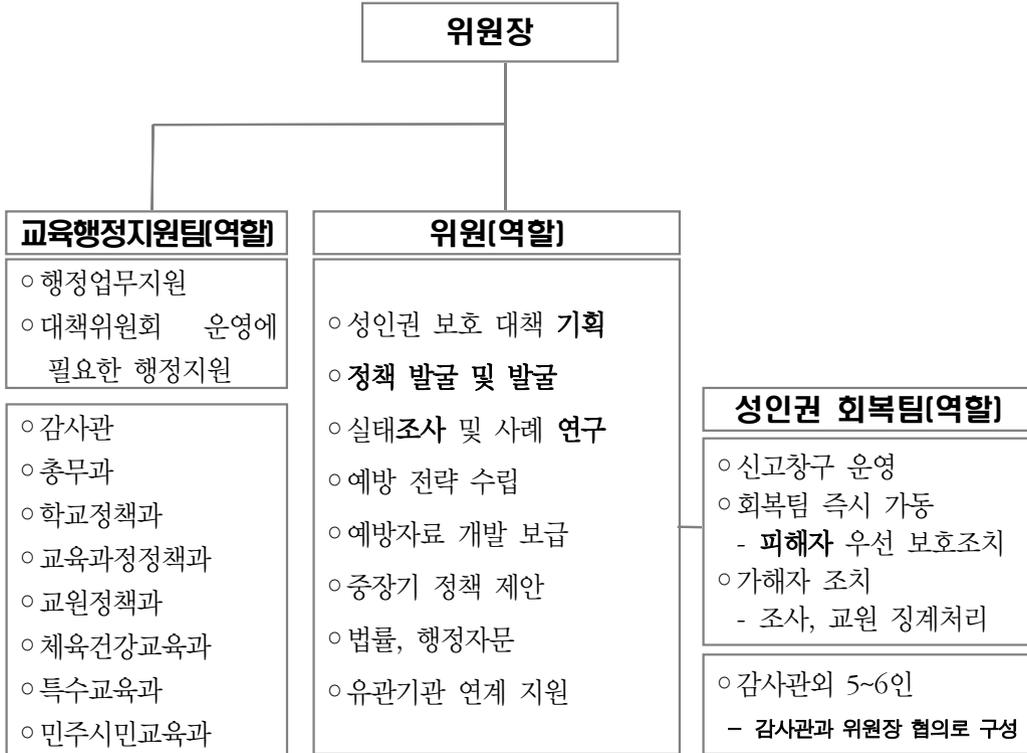
또한 도가니법¹⁾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강화됐음에도, 장애인 성범죄는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50명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14년 1,236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경제투데이 '15.8.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2011)

3. 경기도교육청 ‘성 인권’ 보호 대책

가. (특별 대책기구 조직)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구성원 모두의 성인권 보장 차원 교육 대안 모색과 사안발생시 즉각적 대응 체제 마련



나. (진단)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성인권 침해 사례 분석과 미래 현상 예측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성인권 보장 방법 모색

- 목적 : 성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 현상을 예측하여 발전적 대안 모색
- 내용 : 대상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실태 분석
 - 교직원간, 교직원-학생간, 학생간 발생 성인권 침해 실태와 사례파악
 - 실태 분석을 통한 향후 발생 상황 예측 및 선제적 대응
- 방법 :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
- 결과 활용 : 사례에 따른 대응매뉴얼 개발

다. (예방적 처치) 성범죄 등 성인권 침해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

목적 : 성인권 침해 예방

내용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건전한 성인식 형성
- 예비교원 인성교육, 재직교원 교육, 학생 교육
- 문제 교직원, 문제 학생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특별연수
- 성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
- 성범죄 예방 방법과 자기결정능력 함양
- 신규교사 인성검증 : 교원 임용시 윤리성, 도덕성, 책임감 등 인성 검증 강화
- 감시 강화 : 학교내외 성범죄 현황 파악을 위한 불시점검 시스템 마련
- 학교내 민주적 조직문화 정착 : 권위주의 관행개선 7대 분야에 성평등 문화 선정·추진

권위주의 관행개선 7대 분야



라. (무관용 원칙 대응) 성범죄 등 성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방안 마련

○ 대응창구 일원화 : 경기도교육청 성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가칭)

- (성인권 회복팀) 사안발생시 즉시 소집·관련 부서 합동 대처 팀
- (학생안전과) 사안 인지 즉시 성인권 해복팀과 합동 대처

○ 신고센터 운영 :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전담 신고 센터 운영

※ 2015년 9월부터 운영 031-2490-600(safezone@goe.go.kr)

○ 성인권 침해 발생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교원연수

【참고자료】

교육부 주관 관련 법령 및 규칙 등 개정 예정 사항

○ **성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원 처분 강화**

- (학교) 성폭력 발생 인지 즉시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피해자와 격리조치
- (교육청) 교원 성범죄 확인 시 교육감이 성범죄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신속한 징계처리) 징계의결 기간 단축(60일→30일로 조정)
- (은폐·축소 시 징계 강화) 학교내 성비위 관련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 가능

○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 (임용에서 배제)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성범죄 교원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조치
- (징계별로 교단 배제)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도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를 강화하여 교단에서 배제
- (교원자격 취소 및 취득제한)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
- (성비위 교원 해임시 연금 삭감) 성비위로 교원이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검토

4. 협력이 필요한 때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마다 또는 부서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수평적인 협력과 연대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비슷한 일을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제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 첫 출발은 본 토론에서 시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는 고민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 자료3

성폭력예방교육의 발전 방향

장 수 진 변호사

1. 60대 이상 노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

이번에 실시된 경기도 시민 성인식·성폭력 예방 실태조사의 모든 문항에서 보이는 특성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연령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라는 질문에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26% 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그 접촉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불문하고 대체로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추행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 반해 일부 어르신들의 시각은 강간죄에 대하여 여성의 정조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보았던 80년대 이전의 성폭력 개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다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이로 인해 현재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자주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성폭력을 당하면 보복, 비난등의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령에서 50% 이상이 그렇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성폭력피해자를 대면해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사나 재판의 진행중에도 가능하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폭력수사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언론등에서 접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수사절차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가해자의 보복이나 해코지를 막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러한 막연한 불안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성관계의 동의에 대한 이해

10번 문항인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의 응답이 20대 29.1%, 30대 37.0%, 40대 42.0%, 50대 50.7%, 60대 5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다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간은 남녀 성기의 결합이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합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로 성기의 삽입당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등이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성기 결합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텔에 동의하여 들어간 경우나 강간 이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형사법상 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성폭력예방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체계에 대한 이해

15번 문항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80%가 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몇 백년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는 왜 그렇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30년을 상한으로 두고 있고 가중을 하더라도 50년 까지입니다. 이는 2010 형법이 개정되면서 상한이 올라간 것이고 개정 전에는 상한이 15년이었고 가중하더라도 2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법 체계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외국과 같이 중하게 선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성폭력예방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V. 설문지 문항에 대한 해석

1. 설문지 문항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

설문지 문항 21개는 다음과 같다.

1.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
2.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다.
3.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
4. 이성교제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폭력이다.
5.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
6.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
7.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8.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병자이다.
9. 성폭력을 당하면 2차 피해(보복,비난 등)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
10.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11.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옷은 성폭력을 유발한다.
12.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13.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14. 성폭력이 없어지려면 남녀간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16.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6-1.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우리 지역(시·군)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 만약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1. 만약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면 귀하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이상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들에서 개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의식, 성폭력예방 교육의 여부, 지역의 안정성 여부, 성폭력예방의 대안, 개인의 성폭력 대처 여부를 물어 보았다. 이 중에서 앞의 15문항은 개인의 성폭력과 성의식, 성관념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설문을 통하여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를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 문항을 해석을 통하여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기 전에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 성폭력의 유형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 성폭력의 의미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피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된다.

2)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균형법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피해자의 특징(생년월일, 장애여부)과 범행의 일시, 장소, 가해자의 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협의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성폭력의 유형

① 강간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다가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청소년성보호법 2012. 3. 16. 시행), 이후 ‘사람’으로 확대하였다.(2013. 6. 19. 시행)

※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형법 제 305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행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②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2013. 6. 19. 시행)

③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며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④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2013. 6. 19. 시행)

⑥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⑧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⑨ 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 여성발전기본법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2. 설문지 문항에 대한 해석

(1)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

성폭력의 정의는 각 개인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에 대한 경험인식에 따라, 또는 각자의 가치관에 의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성폭력이고 어떠한 행위들이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이 되는지는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내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권혜원, 2001).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법적, 여성학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위의 강제성 유무에서 규정된다고 하겠다.(김재엽, 이서원, 1998)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 등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정서적 성폭력은 ▶성희롱 : 신체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 등으로 성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을 주는 행위▶음란 전화, 문자, 메일 등 : 성적인 내용의 글, 사진, 영상 등을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음란물 노출 : 공공 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스토킹 :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있으며 신체적인 성폭력으로는 ▶가벼운 성추행 :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심한 성추행 :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 강제 추행 행위 ▶강간 미수 :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강간 : 강제로 성 관계를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체적인 가벼운 성추행 즉, 가벼운 스킨십이란 어떤 사람이 고의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일 경우, 명백한 성폭력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한 부분을 슬쩍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부분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쾌감을 위해 신체의 특정부분을 계속 만지는 행위는 심한 성추행으로 분류되며 이 또한 명백한 성폭력인 것이다.

(2)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를 성희롱이라 하는데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되는 성적 언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④ 기타
 - 그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자료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만약 성희롱을 당했다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희롱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가해자에게 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은 반드시 남겨놔야 하고, 상황이 발생한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장소, 날짜 및 시간, 관련된 사람, 대화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목격자가

있을 경우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 외상이나 정신적 상해에 대한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전화(국번 없이 1331번),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성희롱 여부가 판단되고,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성희롱 행위자와 소속기관에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게 된다.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은 “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가해자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14시간 성희롱 기본교육을 받은 후 위원회에 출석해 4~6시간 동안 일대일로 성희롱특별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성희롱이 정도가 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이나 기업에 가해자의 징계를 권고한다. 만약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일반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회사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

스토킹은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현대 사회의 신종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스토킹행위가 미치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방임하게 되면 폭행·납치·강간·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이 강화되면서, 스토킹 규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건, 김은경,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 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행위의 문제점과 엄격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스토킹을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스토킹에 의해 일상적인 기본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다치다가 끝내는 죽고 있다. 미국에서 스토킹에 대한 법률대응이 본격화 된 것은 1980년 대 말 시트콤에 출연했던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스토킹에게 살해된 이후였다. 스토킹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고 처벌법이 전무하던 가운데, 아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벌금형 부과만이 가능했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수많은 여성의 그들의 스토킹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원민경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4)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처벌되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동반된 경우에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스톱킹 피해에 대해 사법적인 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적인 폭행 외에 가해자가 보낸 이메일과 전화 내역, 문자 내용 등도 그 내용과 지속성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확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한 기록, 심정을 남긴 일기, 주변인에게 평소 스톱킹의 괴로움을 호소한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이성교제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 또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NO’라고 하는 경우 ‘NO’로 받아들이지 그 의미를 ‘YES’로 받아들이면 성폭력이다. 동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성 접촉은 성폭력이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안 돼요"라고 할 때 내숭이라 판단하고 "돼요"라고 자의적으로 해석, "동의나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둘 사이에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Dictionary(사전적 의미)

- 허락(許諾, consent)
-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다(Naver 국어사전, 원출처: 국립국어원)
- 할 수 있도록 들어준다.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
(Daum 국어사전, 원출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청하고 바라는 바를 들어줌, 승낙, 허가(교학 한국어사전)

허락 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

허락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

허락 받지 않은 콘텐츠 사용은? 저작권 침해

그렇다면 허락 받지 않은 성적인 접촉은? 성폭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우리나라 하루 평균 54명 이상 매 27분마다 한 명씩 성폭행 피해자 발생(2012년 경찰청 범죄통계)
성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고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평균 7% 가까이
증가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 하지만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국민의식개선 동영상 ‘허락’ 중에서-

(5)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

성폭력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은 흔히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되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 계획하에서 일어난다. 즉,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성폭력은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 내지는 발산을 위하여 성폭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해자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의식,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여성을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이 강하며 여성을 힘으로 지배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발생한다. 성폭력은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술’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사건에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대부분 술이 개입되는데, 주취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의 원인을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마치 성적 행위를 원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우발적으로 성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가 성적 충동을 부추길 수는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술 때문이 아니다.

(6)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친척, 가족, 친구 또는 보호자,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동네사람 등과 같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즉,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라 하면, 가족이나 친족은 물론 평소 인간적 유대관계가 있는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사람’에는 가족구성원인 아버지나 의붓아버지, 친척, 직장 동료, 고용자와 피고용자, 친구, 애인, 이웃, 사회모임 구성원 등 실로 다양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TV에서 보도되는 성폭력사건의 경우 ‘평소에 전혀 알지 못하던’ 가해자의 범행인 까닭에, 간혹 친족이나 이웃아저씨의 성폭력사건을 접할 경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곤 한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성폭력사건의 83.2%(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는 ‘아는 사람로부터의 범행’이었다. 즉,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닌 우리 주변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모르는 사람을 향해 성폭력을 가하는’ 전문 성폭력범죄죄군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아는 사람로부터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검거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성폭력예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가 있겠는가?’ 라면서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주장되고 강간을 화간으로 몰아부쳐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강간의 상황에서는 남녀간의 물리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 성폭력의 상태에서 끝까지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눈빛과 말투,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사람은 공포 때문에 저항하기가 어렵다.

“두 명의 성인 여성이 남자 한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믿을까? 바로 며칠 전 내가 상담한 사례이다. 피해 여성은 말한다. ‘남자의 뱃은 몸을 본 순간 그냥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부장 혹은 성별제도(gender system)는 여성과 남성의 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다른 해석’은 다름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부장제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시선, 해석, 필요, 기능, 혹은 환타지다”(정희진, 2003)

성폭력의 상황이 벌어지면 여성피해자의 입장에서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하여 저항보다는 무기력해지기 쉬우며, 특히 어른에게 저항해선 안 된다고 학습된 아동청소년에게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강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강간을 당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마다 저항의 표현은 그의 성장과정, 학습 정도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피해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저항의 책임을 묻고,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으로, 다른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다.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극도의 공포로 인하여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저항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해 지기가 쉽다.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피해여성에 대해 저항여부로 동의의사를

판단하려하고, 극단적인 저항의 책임을 돌리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8)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병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 성폭력가해자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사람, 낮은 사람,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아이에게 폭력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범죄자,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는 낮은 사람이나 사회 부적응자보다는 대부분 친구, 이웃,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성폭력 문제를 다음에 있어 법률적 규정이 갖는 첫번째 한계는 폭력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한다는 점이다. 흔히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단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강제력 역시 폭력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김준호 외, 1992)

김준호의 연구에서는 이론에 근거한 44개의 가능한 폭력행위를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이를 6점 척도로 측정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평균 4.5점 이상의 행위를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밤중의 음란·퇴폐전화(평균 : 5.18)'가 가장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에서 여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몸을 만짐'(평균 : 4.88), '여학교 앞에서 남자가 성기를 노출'(평균 : 4.82), '정치범을 임의 동행하여 장기간 감금'(평균 : 4.79점), '여자 혼자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욕설을 함'(평균 : 4.73), '불량배가 여자에게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음'(평균 : 4.70)의 순이었다. 가장 폭력적인 유형으로 인식되는 6개의 행위 중 모두 5개가 여성에 대한 것이었고, 더군다나 상위 3개의 행위는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 성(sexuality)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즉, 언어적인 형태의 폭력도 가능하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강제를 유발시키는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하에서의 불안과 공포도 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문화 및 관행들 속에서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리고 성별, 나이, 계급, 성적 정체성, 종교, 인종, 직업, 교육 정도, 용모에 상관없이 누구도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9) 성폭력을 당하면 2차 피해(보복, 비난 등)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

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외에 주변의 잘못된 통념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차 피해는 수사/법적 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에게 받는 피해뿐만이 아니라 의사, 상담사, 교사,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에게 받는 2차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사/법적 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따른 고통 호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초 발고에서 재판과정까지 반복적인 피해경험 기억유지 :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신고를 했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경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해야 하는 과정의 고통
-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 의심하는 경우 : 피해자의 삶의 배경, 사회환경적 상황에 따른 편견에 맞서 진술하고,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쉽게 의심을 받게 됨으로 이로 인한 고통
- 주변의 지지와 공감 부족 :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고립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 고통
-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의 회유, 협박, 괴롭힘 :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에서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하는 일상적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또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말들은 아래와 같으며, 피해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 평소 하는 거 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 일을 확대시키지 말고 참지 그래~
- 별거 아닌데 뭘 그걸 갖고 그래~
-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한 일인데 신고할려고 그래~
- 별 것도 아닌데 너무 민감한 것 아니야?
- 상대방이 사과했으면 됐지 뭐가 더 문제여?
- 술 마셔서 그런거니까 그냥 좀 참지
- 꽃뱀 아냐? 돈 뜯어낼려고 그러는거지
- 너가 잘못했잖아?

(10)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이성교제 상대와의 첫 성관계 장소를 살펴본 결과, ‘숙박업소’가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또는 상대의 집’이 43.1%로 나타났다. 비디오방 등의 영업장소와 야외에서

이성교제 상대와 첫 성관계를 한 경우도 각각 2.7%와 1.0%로 나타났다(이성교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조승희, 2013)

교제 중의 많은 커플들이 성관계를 위해서 모텔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사실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설령 모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선입견도 우리 사회의 모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되어야 하며, 그보다도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법적 판단은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6월 22일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 윤씨는 대전시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24·여)를 강간한 혐의다.

윤씨는 "A씨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A씨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간음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해 모텔 안으로 들어왔다"며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국민일보, 2015. 10. 16. 기사)

(11)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옷은 성폭력을 유발한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성폭력이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폭력과 다르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논리이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으니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 '야한 옷차림으로 밤에 다니는 것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술을 먹고 모텔에 남성과 동행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 '야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근친 관계나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등 수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들 또한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체화한 성폭력 통념에 익숙하다.

“성폭력에 대해선 살면서 특별히 생각을 안 했는데 피해자유발론 등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음을 알았죠. 아마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박시후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 꽃뱀논리로 봤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받으면서 선명해진 게 있어요.”(산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치마가 짧고 야하게 입고 다니면 왜 저러고 다녀. 저러니 그런 일을 당하지’ 하는 말을 내 입으로 했었어요.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받으러 여기 와서,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해를 하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 광고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두루미)

성폭력상담원교육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통념을 가지게 된 원인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성과 관련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남성이 성에 관해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성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상담의 기본과정을 습득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물리적, 정신적 가해행위를 ‘폭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성폭력범죄는 어느 정도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다른 폭력에 비해 피해자의 감정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는 주관성이 강한 범죄이다. 폭력은 늘 나쁘지만 남성 가해자들이 보기에 “성행위와 멀지 않은 성폭력범죄”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평소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위’인 것이다. 강간죄가 사회적으로 폭행과 폭행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관계가 여성에게 갖는 의미에 있다. 강간은 오로지 여성의 관점에서만 상해인 것이다(맥키넨, 2001)

폭력과 성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동의여부에 달려있지만 가부장사회에서 성행위는 거의 늘 남성 주도적이어서 실제 그 구분은 지극히 어렵다. 남성의 논리에 의해서라면 성폭력 피해 당시 “말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태도가 사후에 법적 고소에 이르렀다면 여성피해자의 어떤 다른 속마음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맥키넨, 2001).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늘 이러한 남성 중심의 논리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꼭 남성들만의 논리가 아니다. 주류의 시선이 사회 전반으로 전해지고 여성, 소수자에게 확산된다. 한 성폭력상담원교육 참여자는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할 언어가 분명해졌음을 인식하였다.

“남편과 서로의 생각이 부딪힐 때도 있는데, 가끔 뉴스거리나 문제가 되는 것들 남자들이 갖는 근본적인 생각 같은 거죠. 직장 내 성희롱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피해여성을 이해 못하겠다고.

피해자가 유발한 것에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잘못했네~ 모텔까지 따라갔잖아, 그 사이에 긴 스토리가 있긴 해요. 가해자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한데, 모텔 갔다고 다 성관계를 갖는 건 아니지 않냐 문제를 지적했더니 너는 공부했다고 그걸 그렇게만 해석하느냐. 오랫동안 토론했죠. 물론 억울한 면이 남자한테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그 여자 잘못했네. 왜 그 술자리에 앉아있어. 집적뎀을 당해?! 뛰쳐나오지.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술 마시고 섹시하게 노래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잘못이야? 최근의 일이었어요. 아직도 평행선이예요.”(하루)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생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었던 성폭력 통념 중 가장 흔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도 있다는 피해자 유발론을 일정정도 재고하게 된다. 여성/남성에게 주어지는 성에 관한 다른 잣대를 실제 경험에서 불러오며, 여성에 대한 통제가 강력히 작동하는 가부장사회에서 양육되어 그것이 사회적으로 습득되어졌다는 맥락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걸리지 않고 보이는 성과 성폭력,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남성중심의 시각을 반영해 왔다는 것. 그것은 사실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닌’ 주류의 시선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성폭력상담원 교육 참여자의 여성주의 인식 수용 경험에 관한 연구, 김지현, 2014)

우리는 흔히 여성의 노출이 남성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폭력을 유발시킨다는 논리가 주장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생각일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은 늦은 밤에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여성에게만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은 늦은 밤에만,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또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24시간,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고르게 분포된다. 노출이 심한 여름철에만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겨울철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1세 미만의 아동에서부터 7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왜곡된 사회적 통념은 단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치졸한 논리일 뿐이다. 여성이 밤늦게 다닌다고 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피해자 유발론)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 풍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12)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의 상호존중이 결여되고 남녀 불평등한 위계구조의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데서 발생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삶에 공포와 불안을 초래하고, 정신적·신체적·성적인 자유를 침해, 위협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중대하고 고질적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문제의 문제이다.

성폭력은 성과 폭력의 결합어로, 성폭력의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박옥임 외, 2004) 사전적 의미로써의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성폭력범죄는 성행위 혹은 성적 행동을 규율하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금지된 행위라고 정의한다(Mclaughlin & Muncie, 2006)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만큼 여성의 인권이 남성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남녀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어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성폭력은 정조의 유린이나 순결의 상실이 아닌 폭력 행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즉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13)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성폭력은 남성 위주, 남성우월체제하에서의 여성 억압과 종속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엇이 강간이고 강간이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다. 성차별적인 성문화 이데올로기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성적 지배현상을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성문화 즉, 사회적으로 남녀가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라는 통념,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남성에 대해 수동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라는 통념을 강하게 학습한 사람일수록 강간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성차별적 성문화 이데올로기의 성윤리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강간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난다. 또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확고할수록 강간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내강간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부장적이며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사회화 정도가 강할수록 아내강간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수동성을 강조하고 가부장인 남편에 대한 부인과 자녀의 절대복종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부장적인 성문화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14) 성폭력이 없으려면 남녀간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Kelly(1987년)는 ‘여성의 이성애(異性愛), 즉 여성의 이성애에 대한 경험은 동의 아니면 강간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선택에서 압력, 강제 그리고 힘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속선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강간, 근친상간, 성적 희롱, 음란물, 매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또는 통제의 표현 과정의 일부이며, 이들 모두는 여성에 대한 지배력의 행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연속선상의 한 끝에 위치하고 있는 정상적인 이성애 역시 가부장적인 남성지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관점을 요약하면 폭력과 성성(sexual characteristics)은 남성의 지배를 유지시키도록 사회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과 비폭력적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이성애도 가부장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가부장적인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유지는 남성에게 권력이 속해 있고 지배적 위치를 갖도록 하는 가족, 집단, 사회, 여성을 희생하여 남성에게 특권을 주는 보편적인 정치구조와 사상을 말하는데 남성 지배와 동의어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한 역사상의 사회 구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가부장적인 권력은 가족, 경제, 언론, 종교, 법,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며 가부장제를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남녀간 평등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성폭력의 해결책을 남성과 단절된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 사회적인 수정과정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5)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살인죄와 비교해본다면 성폭력 범죄가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닌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 정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이 개정되어 오면서 법정형의 하한의 상향이 아니라 상한의 상향이 주가 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대두되는 것에는 이러한 의식이 바탕에 깔리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는 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처벌규정은 지속적으로 상향가중되어 왔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성폭력범죄에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는데 이를 문제삼는다 해서 법정형 하한을 모두 7년 이상으로 법 개정을 한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형벌가중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의 제·개정만

으로는 성폭력범죄 방지나 감소, 그리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시행 이래 2010, 2011, 2012, 2013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여타 범죄 대상 양형기준들보다 가장 빈번하게 매년 수정되었으며, 수정의 주된 내용은 권고형량범위의 수정이다. 즉, 가중영역의 상한을 늘리고, 감경영역의 하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 권고형량범위와 범죄유형의 변화과정을 분석해보면, 성폭력관련 법의 형벌가중의 취지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에 반영하려는 노력, 즉 권고형량강화보다는 범죄유형의 세분화를 통하여 양형법관의 판단에 지침 제시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상식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현이 임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①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현을 위해 거듭 수정을 했는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네 차례에 걸친 수정에도 낮은 수준의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상하한 형량이 여전하다.

따라서 현행 성범죄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상하한 형량 조정, 가중 및 감경인자의 정비,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정립, 특히 집행유예참작사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VI. 참고문헌

- . 2015년 제3회 심포지움 ‘폭력피해자 역량강화의 필요성’, 한국폭력예방상담학회
- . 여성·아동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법무부·대검찰청 외, 2015년
- .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
- . 경기도민의 폭력 허용태도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년
- .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자료집, 안양여성의전화, 2015년
-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움 “성폭력특별법시행 20년을 점검한다”, 2014년
- .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외, 2014년
- . 대한민국국회 외,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4년
- . 씨울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 2014년 경기남부지역 성인대상 찾아 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자료집, 2014년
- . 성폭력상담원 교육 참여자의 여성주의 인식 수용 경험에 관한 연구, 김지현, 2014년
- . 제6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자료집,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년
- . 성폭력예방교육 강의안 매뉴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2013년
- .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년
- . 개소 5주년기념 심포지엄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011년
- . 개소 4주년기념 심포지엄 ‘면식자에 의한 성폭력’(Acquaintance Rape),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010년
- .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아주대학교, 2010년
- . 여성학, 이재경 외, 2007년
- .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 ‘폭력쫓!대화짱!’ 서울여성의전화, 2007년
- . 제35기 여성상담전문교육자료집, 서울여성의전화, 2005년
- . 성폭력 피해자 치유·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매뉴얼, 변혜정, 조중신, 2005년
- . 여성의 성폭력 경험 실태와 그 대책, 홍금자, 1999년
- .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1998년

Ⅶ. 부 록

1. 경기도민 성인식·성폭력예방 실태조사 설문지 양식

경기도민 성인식·성폭력예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사) 경기도 남부 21개 사군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확산코자 상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남부 소재 15개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민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성인식·성폭력예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경기남부 21개 사군지역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확산하는데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 8월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가톨릭여성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여성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사)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씨올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원가정·성상담소(이상 가나다순)

<실태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사)씨올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류복연소장

☎ 031-797-7031

FAX : 031-797-7037

E-Mail : ssialwomen@hanmail.net

※ 본 설문은 경기남부 21개 사군지역 15개소 성폭력상담소의 협조를 통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 | | |
|--------|-------------------------------------------------------|-----|-----------------------------------------------------------------------------------------------------------------------------------------------------|
| 성 별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 연 령 |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이상 |
| 응답자 지역 | 경기도()시·군 | | |

♣ 아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가벼운 스킨십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접촉은 성폭력이다. | | | | | |
| 2 |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비유는 성폭력이다 | | | | | |
| 3 |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성폭력이다. | | | | | |
| 4 | 이성교제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폭력이다. | | | | | |
| 5 |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성폭력을 한다. | | | | | |
| 6 |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다. | | | | | |
| 7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 | | | |
| 8 |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병자이다. | | | | | |
| 9 | 성폭력을 당하면 2차 피해(보복, 비난 등)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 | | | | | |
| 10 |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 | | | | |
| 11 |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옷은 성폭력을 유발한다. | | | | | |
| 12 |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 | | | |
| 13 |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 | | | | |
| 14 | 성폭력이 없어지려면 남녀간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 15 |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 | | | | |

♣ 아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십시오.

16.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16-1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 귀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① 학교 ② 회사 ③ 공공기관 ④ 민간기관 ⑤ 기타()

1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우리 지역(사군)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② 상담소의 역할(성폭력예방) 홍보 강화 ③ 가해자 처벌 강화
④ CCTV설치 확대 ⑤ 방법, 순찰 강화 ⑥기타()

20. 만약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신고하겠다. ② 상담소를 찾아 가겠다. ③ 침묵 하겠다.
④ 가족, 동료에게 알려겠다. ⑤ 기타()

21. 만약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면 귀하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① 경찰서(112) ② 성폭력상담소 ③여성긴급전화(1366)
④ 가족, 동료, 이웃 ⑤ 기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으로 제작함.]

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지역 성폭력상담소주소록

| | 상담소 | 주소 | E-MAIL | 전화번호 | 팩스 | 소장 |
|----|-------------------------|---------------------------------------------|--------------------------|---------------|----------|-----|
| 1 | 가톨릭 여성상담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사동대학) 대학동성당 별관 2층 | helpwoman@hanmail.net | 031)415-0126 | 415-0128 | 김은랑 |
| 2 |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대원플라자 802호 | kpsangdam@hanmail.net | 031)399-0201 | 396-0266 | 하미경 |
| 3 |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로자 302호 | bwhotline@hanmail.net | 032)328-9711 | 328-9712 | 정중숙 |
| 4 | 부천청소년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49 | qhdk1997@naver.com | (032)655-1366 | 688-3293 | 최종희 |
| 5 |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8번길 11, 102호 | ywcccc@hanmail.net | 031)284-1366 | 282-4668 | 양해경 |
| 6 |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동호빌딩 6층) | snwhl@naver.com | 031)751-2050 | 751-2051 | 이은미 |
| 7 |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 서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우림빌딩 704호 | suwonhotline@hanmail.net | 031)232-7795 | 238-7780 | 정선영 |
| 8 |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 ssialwomen@hanmail.net | 031)797-7032 | 797-7037 | 류복연 |
| 9 |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 경기도 안산시 광덕서로 66 하늘법조빌딩 412호 | anycounsel@hanmail.net | 031)413-9414 | 485-9979 | 최승희 |
| 10 |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 경기도 안성시 서당길 39 | mh3131@hanmail.net | 031)676-1366 | 676-1367 | 진민현 |
| 11 |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501호 (안양동, 사인아파트 및 빌딩) | awhl96@hanmail.net | 031)466-1366 | 441-4386 | 이소정 |
| 12 | 평택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25, 2층 | pt1366@hanmail.net | 031)618-1366 | 658-6614 | 김지숙 |
| 13 |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5번길 27 서해상가 4층 | friends-1213@hanmail.net | 031)796-1213 | 796-1284 | 한영애 |
| 14 | 행가래로 의왕가장성상담소 | 경기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 | 452-1311@hanmail.net | 031)452-1311 | 453-1310 | 최영수 |
| 15 |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락커뮤니티 303호 | withus3663@hanmail.net | 031)755-2526 | 758-4724 | 정은자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2015.8.4.] [법률 제13179호, 2015.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2.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칙

-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015-06

2015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토론회 자료집
‘성평등한 성문화는 내가! 우리가 먼저 GOGO해요’

발행인 : 류복연

발행일 : 2015년 11월 3일

발행처 : (사)씨을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15개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순흥빌딩 3층)

Tel. 031)797-7031 Fax. 031)797-7037

인 쇄 : 새 롬

본 출판물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으로 제작함.

